

2016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재

2016년도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16. 5.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2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2
1. 조직 및 인력	2
2. 2016년 업무추진 실적	3
3. 2015년 업무추진 실적	3
III. 감사결과	3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	5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5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3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제도 개선(통보)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3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4
V. 기타사항	15
1. 향후 처리계획 및 특기사항	15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15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15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3부	17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지역본부 및 관내 지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영업 관리,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 지적측량, 자산관리, 소방안전교육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시정, 개선, 지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지역본부 외 관내 ■■■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지적측량, 공간정보 및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민원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측량(전산)장비 관리의 적정성, 회계관리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업무 분야별 고위험 리스크 관리, 경영 목표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4. 18. 부터 같은 해 4. 29. 까지 9일간 9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6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회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본부 및 지사 종합감사를 통하여 업무전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도출되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점, 취약점을 파악하여 미래위험에 대비하고자 함.

○ 본부 및 지사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

구분	강점	약점
본부	▪ 개발중심 수도권지역 위치 ▪ 선도적 공간정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수주	▪ 소송, 적부심 업무 급증 ▪ 공간정보분야 전문 수행 인력 부족
지사	▪ 신기술(UAV, 3D 등)을 활용한 사업경쟁력 강화 ▪ 공간정보 핵심기술력 확보	▪ 공간정보 신기술 활용을 위한 최신장비의 신속한 보급 부족 ▪ 공간정보 우수 인적자원 양성교육 부족

기회	공간정보 및 재난안전관리 인식 증대로 사업 범위 확대
위험	법·제도적 한계로 정책사업 확대 어려움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본부(3처), 지사(30개 지사)

○ 인 력

2016. 4. 22. 현재

정 원	현 원					측량 팀수	비 고
	계	정 규	담당관	보조인력	청년인턴		
829	880	778	43	4	55	225팀	서무 43(명) 접수 56(명)

2. 2016년 업무추진 실적

2016. 4. 22. 현재

(단위: 필/백만 원/%)

구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445,646	124,500	110,763	37,785	24.9	30.3
일반업무	162,644	74,708	56,604	25,166	34.8	33.7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283,002	49,792	54,159	12,619	19.1	25.3

3. 2015년 업무추진실적

(단위: 필/백만 원/%)

구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345,606	110,500	368,205	120,163	106.5	108.7
일반업무	148,465	67,675	179,849	79,903	121.1	118.1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197,141	42,825	188,356	40,260	95.5	94.0

Ⅲ. 감사결과

1. 총 평

□□지역본부 및 ■■■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경영안정과 창조적 도전으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최고의 본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성과 300억’, ‘공간정보사업 96억 달성’을 위하여 ‘자율적 운영’, ‘지속가능 경영’, ‘소통문화 정착’, ‘공간정보 도약’이라는 본부 전략목표를 정하여 전 직원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역본부는 각 부문별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6년 연속 250억 이상 경영성과 달성, 공간정보 111.1% 목표 달성, 개방업무 5년 연속 100억 이상 달성 등 공사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경영실적, 목표량, 공간정보, 개방업무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14년 11개 지구, '15년 23개 지구, '16년 37개 사업지구 100% 수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발주한 최초 사례로 □□지역본부와 소관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이루어 낸 성과이다.

□□지역본부에서는 2016년 정기인사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정기인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해와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으며, 공간정보분야로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구축', '산지구분도 정비 사업',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실태조사', 'UAV활용 국공유지 실태조사' 등 아이디어 회의를 통하여 특화된 신규사업개발 마케팅 사업에 최선을 하고 있다.

또한 반부패 청렴 추진반 운영 및 공익신고 거리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종합감사 결과 본부에서는 고객의 소리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 등 10건(본사 제도개선 1건, 통보 2건 포함), ■■■지사 등 8개 지사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지급 각서 징구 소홀 등 13건으로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본부 및 일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측량업무의 전반적인 점검과 지적측량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 및 문서 지시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건수	23 (9)	18		1			2	1		1	(9)	12
금액	728,496,160 (75,900)						569,667,780	158,828,380			(75,900)	

※ ()는 현지처분임, 본사 개선 1건, 통보 2건 포함.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본사 제도개선(통보) 분야

2016-6
지분요구서 일련번호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청구분 수입 조치 소홀(○○○○실)

< 요약 >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요청(○○○○실-5635: 2013. 12. 31.)

측량업무 정산 완료 후 지적측량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통합 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해 자동 청구하였으나 청구 후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제외) 수입이 되지 않고 리스크 기간이 주의 단계인 최소 32일에서 최대 55일까지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25건 21,406,000원이 수입 조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에서는 지적측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청구분에 대하여 정산주기를 D+5일 단일정산주기로 청구 후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제외)에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를 입금하여야하나 리스크 기간이 관심단계인 최소 8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청구 후 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726건 546,761,400원 총 751건 568,167,400원에 대한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청구분 수입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2016- 7 측량(전산)장비 관리대장 및 점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십)

< 요약 >

「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측량장비의 관리)

지사장의 측량(전산)장비 점검은 수기대장에 작성 관리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측량장비 관리대장과 ERP시스템 관리대장이 결재선 등이 서로 상이하며, ERP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부장, 지사장은 점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측량장비 관리대장 및 지사장 수기 측량(전산)장비 점검 등 관리방법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측량장비 관리요령」 및 ERP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함.

2016- 8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체)

< 요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6조(민원사항의 처리)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련 접수 방법 알림(2014. 12. 31.)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에 대하여 재강조 지시하고,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을 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 및 업무지원시스템(COS)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무료경감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나. 지적행정 및 지적측량 분야

20- 1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지분요구서 일련번호)

< 요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6조(민원사항의 처리)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련 접수 방법 알림(2014. 12. 31.)

측량민원 확인측량 47건(34,804,100원)을 업무지원시스템(COS) 접수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무료경감 봉사실적(34,804,100원)이 누락 되는 등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0- 2 지적측량 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 작성) 활용 소홀

< 요 약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제4항

고도화된 지적측량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활용실적이 2014년 9.0%, 2015년 15.0%로 극히 저조하게 활용하는 등 지적측량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활용을 소홀히 하였음.

20- 3 지적측량 장기미결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 요 약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지적측량업무 69건 430필 158,489,100원에 대하여 최초 측량예정일로부터 최장 446일 동안 서면 연기 없이 전화통화로만 연기하는 등 지적측량 장기미결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20-10 지적측량업무처리(성과도 지연발급 및 검사요청 지연) 소홀

< 요 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시 ▣▣ 구 ●●동 397-1 번지 외 1건은 정산일자보다 지연하여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발급하였으며, ◇◇시 □□구 ◆◆◆동 736-66번지 외 3건은 정산을 완료하고 4~11일 지연하여 검사요청 하는 등 지적측량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20-12 지적측량 고객센터 서비스 처리 소홀

< 요 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제2항, 「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지적측량의뢰서 접수) 제1항,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12조(민원 1회 방문 처리)

2015년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공부정리분에 대한 성과도 교부의 대행처리 실적이 없으며, 그에 따른 원스톱 측량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적측량 고객센터 서비스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0-13**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성과물 등록처리 소홀****< 요약 >**

「업무규정」 제19조(업무의 완료), MOS 사용자 매뉴얼(2014. 7. 23.)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접수 취소된 70%, 90%, 100%(성과제시불능 등) 업무 17건 중 4건은 고시된 측량수수료의 10%를 수입하면서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을 미등록 하였으며, 성과제시불능 등의 사유로 취소(100%)된 업무 1건도 측량성과물(결과도 ZIP파일, GDB 등)을 미등록 처리하여 총 5건(29.4%)의 지적 측량수수료 반환에 따른 성과물 등록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20-18**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 요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6조(민원사항의 처리),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확인측량 접수 방안 알림(☒☒☒☒처 업무연락: 2015. 1. 13.)

측량민원 확인측량 5건(5,045,000원)을 업무지원시스템(COS) 접수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무료경감 봉사실적(5,045,000원)이 누락 되는 등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다. 인사행정 분야**20- 4****비정규직(보조인력) 채용업무 부적정****< 요약 >**

「사무 및 현장보조인력관리지침」 제5조, 제6조의 2, 제8조 및 제11조

20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처-4604: 2015. 8.20.)

경기2015부해1417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위원회: 2015. 9. 3.)

「사무 및 현장보조인력관리지침」에 따른 채용계획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확정형 고졸인재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고졸 우수인재(보조인력) 채용계획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하여 보조인력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미흡하게 하였음.

라. 자산관리 분야

20- 6 건축물 하자검사업무 소홀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2조(하자검사), 부동산관리실무교육 교재

신사옥의 일부부분에 대해서만 1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관련 사규와 달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자 검사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 할때에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보수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해야 하나 보수계획을 제출받지 않고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음.

20-14 사무실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 납부 소홀

< 요 약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7조(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부담)

2015. 1월에서 2016. 3월까지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납부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실사용량에 대한 금액만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등 사무실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납부를 소홀히 하였음.

마. 회계사무 분야

20- 5 급여 등 보수지급 부적정

< 요 약 >

「급여규정」 제8조(보수의 계산 등), 제9조(휴가, 휴직자의 보수) 제2항 제4호

승진자 및 출산휴가자에 대한 급여, 대우수당, 효도수당 등의 보수를 과다(1,500,380원), 과소(339,280원) 지급하였음.

20-11**교육훈련비(운임) 정산 소홀****< 요 약 >**

「교육훈련규정」 제3조(의무와 책임), 「교육훈련규칙」 제7조(교육여비 지급 기준)
「여비규정」 제6조(여비의 결제 및 정산)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수교육을 제외한 교육훈련을 총 31회(2015년 국어전문교육 등 26회, 2016년 수수료교육 등 5회) 실시하면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교육훈련비(운임) 정산을 소홀히 하였음.

20-15**지출원인행위(물품품의 및 요구서) 소홀****< 요 약 >**

「재무규정」 제21조(지출) 및 제39조(지출원인 행위)
「회계사무처리규칙」 제41조(대가의 지급)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추정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음.

20-19**회의비 집행 업무 소홀****< 요 약 >**

「예산집행지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견적서에 의한 가격 결정)

2015년~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회당 100만 원 미만의 총 15회 회의비(다과 구입 추정)를 집행하면서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내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법인카드로 다과를 구입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지출증빙인 법인카드 매출전표 또한 구입내역이 없어 다과를 구입한 것인지 미확인 되는 등 회의비 지출업무에 소홀히 하였음.

20-20**세출과목(교육훈련비 및 여비교통비) 적용 소홀****< 요 약 >**

「예산집행지침」, 「교육훈련규정」 제4조 및 제11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28건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여비교통비로 지출해야 할 것을 교육훈련비로 지출하거나, 교육훈련비로 지출해야 할 것을 여비교통비로 지급하는 등 세출과목 적용을 소홀히 하였음.

바. 계약사무 분야

20- 7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수기계약 등록) 소홀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제45조(계약서의 작성) 제1항, 제46조(전자계약체결)

2015. 1. 1.에서 2016. 4. 27.까지 계약실적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6건(1,438,549,201원)에 대한 계약건을 집행하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총 28건(112,663,466원)을 누락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수기계약 등록)을 소홀히 하였음.

20- 8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 소홀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 제3항,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

검수완료 전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거나 하자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건물창호공사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을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와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한 사실이 있음.

사. 일반행정 및 복무행정 분야

20- 9 직원 근태처리(출·퇴근 정정) 소홀

< 요 약 >

「정관」 제28조 제2항,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근태관련 중요 기초자료가 되는 개인별 출·퇴근 정정사항을 짧게는 2일, 길게는 27일이 경과한 후 정정하는 등 개인별 근태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20-16 업무용 임차차량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 요 약 >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제4조(차량관리자) 및 제8조(연료공급)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도 차량관리자가 차량운행일지에 누락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효율적인 주유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20-17 차량관리자 유류대금 정산 관리 소홀

< 요 약 >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제4조(차량관리자) 및 제8조(연료공급), 「예산집행지침(차량유지비)

주유금액 착오 등록 및 주유금액 누락, 주유 할인금액 미적용으로 지출내역이 구입(정산)내역과 다르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음.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0- 1	●●●●처 (☒☒☒☒처)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	통보			1개월	
20- 2	●●●●처	지적측량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활용 소홀	통보			1개월	
20- 3	●●●●처	지적측량 장기미결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시정	반환 158,489,100원		1개월	
20- 4	◆◆◆◆처 (☒☒처)	비정규직(보조인력) 채용업무 부적정	문책		1명	20일	
20- 5	◆◆◆◆처	급여 등 보수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500,380원 지급 339,280원		1개월	
20- 6	◆◆◆◆처	건축물 하자검사업무 소홀	통보			1개월	
20- 7	◆◆◆◆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수기계약 등록) 소홀	통보			1개월	
20- 8	☐☐☐지사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 소홀	통보			1개월	
20- 9	★★지사	직원 근태처리(출·퇴근 정정) 소홀	통보			1개월	
20-10	★★지사	지적측량업무처리(성과도 지연발급 및 검사요청 지연) 소홀	통보			1개월	
20-11	○○○○지사	교육훈련비(운임) 정산 소홀	통보			1개월	
20-12	○○○○지사	지적측량 고객서비스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20-13	◇◇지사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성과물 등록처리 소홀	통보			1개월	
20-14	◇◇지사	사무실 임대애 따른 관리비 납부 소홀	통보			1개월	
20-15	◆◆지사	지출원인행위(물품품의 및 요구서) 소홀	통보			1개월	
20-16	◆◆지사	업무용 임차차량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통보			1개월	
20-17	▲▲지사	차량관리자 유류대금 정산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20-18	△△△지사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	통보			1개월	
20-19	△△△지사	회의비 집행 업무 소홀	통보			1개월	
20-20	●●지사	세출과목(교육훈련비 및 여비교통비) 적용 소홀	통보			1개월	

※ 처분요구: 20건<시정 2건, 문책 1건, 통보 17건>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비정규직(보조인력) 채용업무 부적정	문책	□□지역본부 ◆◆◆◆처	기획경영직 3급	김○○	「사무 및 현장보조인력관리지침」에 따른 채용계획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확정형 고졸인재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고졸 우수인재(보조인력) 채용계획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하여 보조인력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미흡하게 하였음.

1-2. 제도 개선(통보) 처분요구 명세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감사자
2016- 6	본사 目目目目실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청구분 수입 조치 소홀	지적측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청구분 751건 568,167,400원을 즉시 수입 조치	
2016- 7	본사 目目目目실	측량(전산)장비 관리대장 및 점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측량장비 관리대장 및 지사장·지역본부장의 수기 측량(전산) 장비 점검 등 관리방법을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측량 장비 관리요령」 및 ERP시스템 점검방법을 개선	
2016- 8	본사 目目目目처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 경감 실적관리 소홀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에 대하여 재강조 지시하고,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을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및 업무지원시스템(COS)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무료경감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9- 1	□□□지사	지적측량 장기미결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현지통보		
9- 2	□□□지사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처리 부적정	현지시정	회수 75,900원	
9- 3	★★지사	지적측량수수료 정산에 따른 송금업무 처리 소홀	현지통보		
9- 4	○○○○○지사	지적측량수수료 정산에 따른 송금업무 처리 소홀	현지통보		
9- 5	◆◆지사	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을 위임 받은 자의 위임장 제출 확인 소홀	현지통보		
9- 6	▲▲지사	지적측량 접수(위임장 및 도식자료 첨부) 업무 처리절차 소홀	현지통보		
9- 7	○○지사	PC 등 단말기 보안에 따른 조치 및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작성 소홀	현지통보		
9- 8	○○지사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의 성과물 등록 소홀	현지통보		
9- 9	○○지사	지출업무처리 시 품의요구서 작성 소홀	현지통보		

V.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청렴교육



감사결과 마감회의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 방문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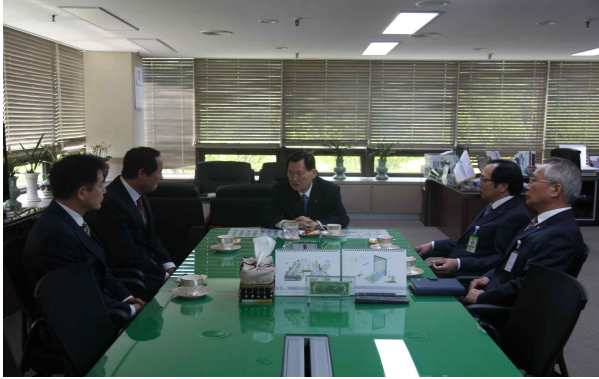
- 4. 25.(월): ▲▲지사
- 4. 26.(화): □□지역본부

- 참 석 자 : 상임감사, 본부장, 지사장 및 직원 등 113명

- 교육내용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사명변경 등 공사 정책, 안전관리, 공직자 행동강령 및 정부 경영지침 준수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시행 대비 교육



청렴/반부패/「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교육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3부. 끝.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청구분 수입 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여 지적측량을 의뢰 받고 있다.

㉸㉸㉸㉸㉸㉸㉸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요청(㉸㉸㉸㉸실-5635: 2013. 12. 31.)에 따르면 “공사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 납부 편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대행 결제방식을 도입 시행하고자 전자지불서비스(㉸㉸㉸㉸㉸㉸㉸서비스)를 ㉸㉸㉸㉸㉸㉸㉸과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약서 및 제안서 내용을 보면 지적측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청구분에 대하여 정산주기를 D+5일¹⁾ 단일정산주기로 되어 있으며, 지적측량업무 정산 완료 시 자동으로 ㉸㉸㉸㉸㉸㉸㉸ 통합 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한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가 청구가 되며, 청구 후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제외)에 ㉸㉸㉸㉸㉸㉸㉸에서 는 공사로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청구분을 입금하여야 한다.

1) D+5일: D는 정산 완료일임.

[표] 지적측량수수료 신용카드 청구분 리스크기간 주의 단계 현황(기준일: 2016. 4. 25.현재)

기관별		종목	접수번호	청구일자	청구금액 (부가세포함)	리스크 기간	리스크 단계
지역본부	지사						
○○○○○	○○○○○지사	경계복원	25	2016-03-08	762,300	49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	2016-03-03	621,500	54일	주의
○○○○○	○○○지사	지적현황	2	2016-03-03	640,200	54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34	2016-03-18	552,200	39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514	2016-03-09	1,449,800	48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584	2016-03-25	453,200	32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94	2016-03-21	1,164,900	36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96	2016-03-24	333,300	33일	주의
◇◇◇	◇◇◇지사	지적현황	83	2016-03-09	239,800	48일	주의
◆◆◆◆	◆◆◆지사	등록전환	3	2016-03-16	1,043,900	41일	주의
◆◆◆◆	◆◆◆지사	분할측량	9	2016-03-16	882,200	41일	주의
◆◆◆◆	◆◆◆지사	분할측량	37	2016-03-03	1,914,000	54일	주의
◆◆◆◆	◆◆◆지사	분할측량	7	2016-03-16	2,090,000	41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18	2016-03-18	283,800	39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40	2016-03-18	755,700	39일	주의
◆◆◆◆	◆◆◆지사	지적현황	73	2016-03-18	644,600	39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0	2016-03-18	1,870,000	39일	주의
㉠㉠	㉠㉠지사	분할측량	76	2016-03-02	820,600	55일	주의
㉠㉠	㉠㉠지사	분할측량	86	2016-03-14	561,000	43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36	2016-03-18	814,000	39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46	2016-03-18	602,800	39일	주의
㉠㉠㉠㉠	㉠㉠지사	경계복원	16	2016-03-04	957,000	53일	주의
㉠㉠㉠	㉠㉠지사	분할측량	205	2016-03-16	631,400	41일	주의
㉠㉠㉠	㉠㉠지사	분할측량	206	2016-03-17	1,251,800	40일	주의
㉠㉠	㉠㉠지사	부대기타	2	2016-03-09	66,000	48일	주의
계		25건			21,406,000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측량업무 정산 완료 후 지적측량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 통합 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해 자동 청구하였으나 청구 후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제외) 수입이 되지 않고 리스크 기간이 주의 단계인 최소 32일에서 최대 55일까지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25건 21,406,000원이 수입 조치되지 않고 있다.

[별표] 지적측량수수료 신용카드 청구분 리스크기간 관심 단계 현황(기준일: 2016. 4. 25.현재) 따로

붙임 참조

또한 [별표] 현황과 같이 ●●●●●●●●에서는 지적측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청구분에 대하여 정산주기를 D+5일 단일정산주기로 청구 후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제외)에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를 입금하여야하나 리스크 기간이 관심단계인 최소 8일에서 최대 29일까지 청구 후 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726건 546,761,400원 총 751건 568,167,400원에 대한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청구분 수입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청구분 751건 568,167,400원이 조기 수입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실장)은 지적측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청구분 751건 568,167,400원을 즉시 수입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신용카드 수수료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지적측량수수료 신용카드 청구분 리스크기간 관심 단계 현황(기준일: 2016. 4. 25.현재)

기관별		종목	접수번호	청구일자	청구금액 (부가세포함)	리스크 기간	리스크 단계
지역본부	지사						
☒☒	☒☒☒☒지사	경계복원	162	2016-04-16	762,3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20	2016-04-16	826,100	10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73	2016-04-14	364,1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75	2016-04-18	378,4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4	2,646,6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5	2016-04-15	640,2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7	2016-04-16	640,200	10일	관심
☒☒	☒☒☒☒지사	부대기타	35	2016-04-18	66,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5	2016-04-15	621,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6	2016-04-15	991,1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9	2016-04-15	1,009,8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02	2016-04-15	684,2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04	2016-04-18	236,5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05	2016-04-18	850,3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06	2016-04-18	850,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4	2016-04-14	640,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11	2016-04-18	640,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18	2016-04-18	640,2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08	2016-04-15	378,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48	2016-04-18	762,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1	2016-04-18	640,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4	2016-04-15	1,764,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9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5	2016-04-18	1,333,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45	2016-04-14	1,009,8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8	2016-04-14	882,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65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97	2016-04-14	910,8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69	2016-04-14	814,0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26	2016-04-15	826,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44	2016-04-15	404,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47	2016-04-15	716,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86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87	2016-04-16	400,4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94	2016-04-16	600,6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96	2016-04-18	619,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20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36	2016-04-16	1,234,2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42	2016-04-15	1,530,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4	2016-04-14	640,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70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1	2016-04-18	1,287,0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9	2016-04-15	765,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8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1	2016-04-18	518,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2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7	2016-04-15	654,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0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3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0	2016-04-14	880,0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32	2016-04-18	2,534,4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21	2016-04-18	569,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32	2016-03-31	910,800	26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4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86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	2016-04-18	640,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8	2016-04-18	476,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09	2016-04-15	744,7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28	2016-04-15	49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35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43	2016-04-18	910,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74	2016-04-15	807,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1	2016-04-14	577,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24	2016-04-14	1,050,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28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38	2016-04-14	654,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5	2016-04-15	2,498,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3	2016-04-15	500,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8	2016-04-15	1,390,4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10	2016-04-18	121,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20	2016-04-15	716,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23	2016-04-14	592,9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56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60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51	2016-04-14	1,764,4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01	2016-04-18	592,9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532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563	2016-04-15	589,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95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10	2016-04-18	1,201,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1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12	2016-04-18	800,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27	2016-04-15	1,277,100	11일	관심
☐☐	☐☐지사	등록전환	24	2016-04-18	433,4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74	2016-04-18	113,3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78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90	2016-04-15	476,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95	2016-04-15	1,878,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12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17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419	2016-04-14	1,366,2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42	2016-04-18	941,6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22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6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7	2016-04-14	640,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14	2016-04-16	938,3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15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19	2016-04-15	500,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21	2016-04-16	938,3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26	2016-04-18	518,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1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85	2016-04-18	1,760,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77	2016-04-16	595,100	10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52	2016-04-18	906,4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05	2016-04-18	1,058,2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04	2016-04-18	712,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5	2016-04-14	1,277,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88	2016-04-18	1,652,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92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85	2016-04-15	1,812,8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11	2016-04-14	946,0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65	2016-04-18	378,4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03	2016-04-18	826,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28	2016-04-18	750,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87	2016-04-14	520,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88	2016-04-14	425,7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98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13	2016-03-28	814,000	29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77	2016-03-28	713,900	29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83	2016-03-28	1,735,800	29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37	2016-03-28	595,100	29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53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63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66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67	2016-04-14	814,0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74	2016-04-14	938,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75	2016-04-15	927,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77	2016-04-15	1,169,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83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90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93	2016-04-15	476,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95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98	2016-04-18	814,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8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92	2016-04-18	595,1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854	2016-04-14	1,246,9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57	2016-04-18	1,563,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96	2016-04-14	1,009,8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35	2016-04-15	500,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36	2016-04-15	1,433,3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63	2016-04-16	107,800	10일	관심
☐☐	☐☐지사	등록전환	4	2016-04-15	481,8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11	2016-04-15	966,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25	2016-04-18	2,103,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42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48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19	2016-04-14	654,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20	2016-04-18	600,6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6	2016-04-14	1,281,5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98	2016-04-15	983,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48	2016-04-15	577,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5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58	2016-04-15	400,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62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66	2016-04-18	520,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84	2016-04-18	1,164,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08	2016-04-18	3,261,5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67	2016-04-14	972,4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94	2016-04-14	1,018,6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268	2016-04-18	1,465,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46	2016-04-14	1,652,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11	2016-04-14	520,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46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48	2016-04-18	826,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97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21	2016-04-14	794,2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45	2016-04-18	820,6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1	2016-04-14	650,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9	2016-04-15	1,314,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4	2016-04-18	786,5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60	2016-04-18	938,3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61	2016-04-14	673,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0	2016-04-18	1,449,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4	2016-04-14	1,540,0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8	2016-04-16	1,043,900	10일	관심
☐☐	☐☐지사	부대기타	36	2016-04-18	66,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21	2016-04-12	619,300	14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50	2016-04-12	1,192,400	14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04	2016-04-12	349,800	14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92	2016-04-18	63,8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29	2016-04-14	2,858,9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2	2016-03-31	1,277,100	26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09	2016-04-15	750,2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28	2016-04-15	1,471,8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81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98	2016-04-15	756,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39	2016-04-18	919,6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97	2016-04-14	700,7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16	2016-04-14	1,301,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52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62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6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75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97	2016-04-15	750,2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580	2016-04-14	1,485,0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91	2016-04-14	687,5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320	2016-04-14	845,9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21	2016-04-15	856,9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552	2016-04-15	640,2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601	2016-04-15	1,350,8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분할측량	269	2016-04-14	53,9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분할측량	275	2016-04-14	47,3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분할측량	286	2016-04-14	134,2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분할측량	292	2016-04-14	53,9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37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100	2016-04-18	140,800	8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96	2016-04-14	354,2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40	2016-04-14	814,0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44	2016-04-15	1,277,1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45	2016-04-14	713,9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65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71	2016-04-15	1,335,4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분할측량	47	2016-04-15	880,0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분할측량	54	2016-04-14	679,8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37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충청지사	경계복원	192	2016-04-14	333,3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46	2016-04-15	776,6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39	2016-04-11	333,300	15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62	2016-04-15	611,6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15	2016-04-18	927,300	8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17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40	2016-04-18	716,100	8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4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514	2016-04-18	910,800	8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515	2016-04-15	1,050,5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분할측량	350	2016-04-15	536,8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149	2016-04-14	613,8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146	2016-04-15	937,2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41	2016-04-18	737,000	8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47	2016-04-14	430,1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48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경계복원	45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143	2016-04-15	165,0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지사	지적현황	200	2016-04-15	448,8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충청지사	경계복원	212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충청	충청충청지사	경계복원	3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68	2016-04-08	595,100	1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71	2016-04-08	625,900	1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7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76	2016-04-14	1,530,100	12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77	2016-04-15	400,4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92	2016-04-15	851,4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168	2016-04-18	973,5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169	2016-04-18	863,5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170	2016-04-18	525,8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218	2016-04-18	70,4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34	2016-04-15	404,8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38	2016-04-16	532,400	10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46	2016-04-18	1,058,2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51	2016-04-18	1,267,2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61	2016-04-15	404,8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91	2016-04-18	966,9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469	2016-04-18	468,6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514	2016-04-18	532,4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293	2016-04-14	536,800	12일	관심
0000	0000지사	지적현황	113	2016-04-15	822,8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지적현황	83	2016-04-18	482,9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131	2016-04-16	349,800	10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132	2016-04-16	716,100	10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133	2016-04-18	794,2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64	2016-04-18	804,1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70	2016-04-15	52,8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지적현황	47	2016-04-15	612,7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지적현황	50	2016-04-14	159,500	12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77	2016-04-15	403,7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20	2016-04-16	468,600	10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321	2016-04-16	660,000	10일	관심
0000	0000지사	지적현황	81	2016-04-16	469,700	10일	관심
0000	00000000지사	경계복원	314	2016-04-04	468,600	22일	관심
0000	00000000지사	경계복원	332	2016-04-14	339,900	12일	관심
0000	00000000지사	경계복원	339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0000	00000000지사	경계복원	396	2016-04-16	776,600	10일	관심
0000	00000000지사	분할측량	218	2016-04-15	786,500	11일	관심
0000	00000000지사	분할측량	247	2016-04-18	574,200	8일	관심
0000	000000지사	경계복원	185	2016-04-14	755,700	12일	관심
0000	000000지사	경계복원	186	2016-04-15	333,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05	2016-04-15	1,031,8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81	2016-04-15	556,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65	2016-04-14	339,9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00	2016-04-14	510,4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5	822,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9	2016-04-18	551,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85	2016-04-14	851,4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60	2016-04-18	605,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94	2016-04-18	1,205,6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44	2016-04-15	339,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9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4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	2016-04-14	4,479,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2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86	2016-04-15	814,0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25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35	2016-04-14	498,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6	2016-04-18	520,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98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40	2016-04-14	1,381,6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45	2016-04-14	1,312,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0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61	2016-04-14	4,268,0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28	2016-04-15	108,9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33	2016-04-16	583,0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70	2016-04-16	2,315,5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03	2016-04-15	625,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09	2016-04-16	713,9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25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30	2016-04-16	625,900	10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21	2016-04-16	103,4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53	2016-04-18	788,7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54	2016-04-15	532,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	2016-04-12	322,300	14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84	2016-04-15	618,2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99	2016-04-15	525,8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32	2016-04-14	1,024,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9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59	2016-04-15	468,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66	2016-04-15	883,3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5	1,012,0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405	2016-04-16	619,300	10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414	2016-04-15	532,4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149	2016-04-15	602,8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163	2016-04-15	946,0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164	2016-04-15	761,2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177	2016-04-14	631,4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지적현황	78	2016-04-15	1,321,1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지적현황	81	2016-04-15	236,5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지적현황	86	2016-04-15	354,2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부대기타	8	2016-04-15	66,0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78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79	2016-04-15	700,7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81	2016-04-15	1,221,0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82	2016-04-15	650,1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93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400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404	2016-04-15	1,135,2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444	2016-04-18	595,1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등록전환	62	2016-04-15	674,3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208	2016-04-14	698,5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271	2016-04-14	360,8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285	2016-04-14	786,5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325	2016-04-15	631,4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329	2016-04-15	946,0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337	2016-04-15	2,063,6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지적현황	77	2016-04-18	306,9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142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78	2016-04-15	750,2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5	2016-04-18	1,835,9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지적현황	22	2016-04-18	918,5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175	2016-04-12	1,156,100	14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177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187	2016-04-18	1,333,2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188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분할측량	44	2016-04-15	141,9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지적현황	35	2016-04-12	850,300	14일	관심
읍면동	읍면동지사	경계복원	336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90	2016-04-18	1,314,5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22	2016-04-18	700,7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27	2016-04-18	476,3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31	2016-04-18	740,3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42	2016-04-18	1,009,8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57	2016-04-15	876,7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217	2016-04-18	446,6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220	2016-04-15	536,8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229	2016-04-15	536,8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75	2016-04-16	468,600	10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97	2016-04-16	910,800	10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21	2016-04-15	867,9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39	2016-04-15	1,614,8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41	2016-04-15	3,182,3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45	2016-04-15	679,8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51	2016-04-15	691,9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53	2016-04-15	411,4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70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85	2016-04-18	1,164,9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89	2016-04-18	910,8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525	2016-04-18	625,9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330	2016-03-31	1,762,200	26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434	2016-04-15	679,8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부대기타	7	2016-04-15	6,6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10	2016-04-15	551,1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14	2016-04-15	441,1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18	2016-04-16	448,800	10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25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26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42	2016-04-15	938,3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06	2016-04-18	1,234,2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224	2016-04-18	919,6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241	2016-04-18	856,9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38	2016-04-14	282,700	12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44	2016-04-15	2,043,8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49	2016-04-14	378,400	12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58	2016-04-18	306,9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98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02	2016-04-14	569,800	12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416	2016-04-18	1,277,1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453	2016-04-15	716,1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469	2016-04-18	814,0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496	2016-04-18	1,314,5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497	2016-04-18	1,201,2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531	2016-04-18	1,303,5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53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219	2016-04-18	946,0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248	2016-04-18	720,5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지적현황	119	2016-04-15	613,8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112	2016-04-15	1,114,3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245	2016-04-14	1,190,2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275	2016-04-18	814,0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284	2016-04-18	716,1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318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331	2016-04-18	713,9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165	2016-04-14	674,3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168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173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205	2016-04-14	631,4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213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222	2016-04-14	820,6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지적현황	94	2016-04-18	752,4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195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6	1,164,900	10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222	2016-04-16	713,900	10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484	2016-04-16	518,100	10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등록전환	14	2016-04-18	572,000	8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119	2016-04-14	100,1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216	2016-04-14	946,0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243	2016-04-14	83,600	12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지적현황	257	2016-04-15	613,8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지적현황	311	2016-04-16	354,200	10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205	2016-04-16	280,500	10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분할측량	128	2016-04-15	68,2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302	2016-04-15	1,888,7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346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359	2016-04-15	1,481,700	11일	관심
읍면동	읍면지사	경계복원	363	2016-04-18	551,1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64	2016-04-15	858,0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72	2016-04-18	283,8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96	2016-04-15	660,0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71	2016-04-15	201,3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72	2016-04-15	235,400	11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44	2016-04-18	551,1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76	2016-04-14	551,100	12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84	2016-04-18	543,4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87	2016-04-18	532,4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09	2016-04-18	1,628,0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63	2016-04-18	74,8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13	2016-04-18	418,0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15	2016-04-18	473,000	8일	관심
읍읍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128	2016-04-18	165,0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105	2016-03-28	1,331,000	29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22	2016-04-14	333,300	12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52	2016-04-15	251,900	11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73	2016-04-14	691,900	12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83	2016-04-18	660,0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지적현황	36	2016-04-14	236,500	12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8	2016-03-30	880,000	27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부대기타	13	2016-04-18	66,0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53	2016-04-15	592,900	11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63	2016-04-14	623,700	12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83	2016-04-15	507,100	11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93	2016-04-15	595,100	11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299	2016-04-16	543,400	10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13	2016-04-18	404,8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21	2016-04-14	532,400	12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72	2016-04-18	488,4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80	2016-04-18	720,5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82	2016-04-18	464,2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87	2016-04-18	446,6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100	2016-04-18	551,100	8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53	2016-03-30	1,333,200	27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89	2016-04-15	819,500	11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분할측량	148	2016-04-15	684,200	11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08	2016-04-14	468,600	12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14	2016-04-15	716,100	11일	관심
읍읍	읍읍지사	경계복원	323	2016-04-18	814,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24	2016-04-18	425,7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82	2016-04-18	487,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2	2016-04-16	366,3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80	2016-04-18	1,277,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3	2016-04-18	1,050,5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9	2016-04-18	713,9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76	2016-04-18	760,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6	2016-04-18	339,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4	2016-04-14	433,4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50	2016-04-15	602,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78	2016-04-15	404,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16	2016-04-15	776,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17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36	2016-04-15	339,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37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68	2016-04-15	525,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1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15	2016-04-15	1,221,0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24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33	2016-04-15	592,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34	2016-04-18	619,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35	2016-04-18	600,6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05	2016-04-18	639,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65	2016-04-15	826,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0	2016-04-16	600,6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9	2016-04-18	520,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0	2016-04-18	476,300	8일	관심
□	□지사	부대기타	9	2016-04-18	66,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1	2016-04-18	595,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74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8	873,4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97	2016-04-18	660,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05	2016-04-18	814,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14	2016-04-18	651,2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31	2016-04-18	475,2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41	2016-04-18	1,284,8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48	2016-04-18	446,600	8일	관심
□	□지사	부대기타	10	2016-04-15	66,0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71	2016-04-15	550,0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2	2016-04-14	404,8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5	2016-04-15	453,2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12	2016-04-14	346,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22	2016-04-15	448,8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07	2016-04-15	1,284,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3	2016-04-14	619,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4	2016-04-14	499,4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03	2016-04-18	988,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9	2016-04-15	280,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80	2016-04-15	333,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81	2016-04-18	476,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82	2016-04-18	400,4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11	2016-04-18	533,5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30	2016-04-14	487,3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33	2016-04-18	722,7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47	2016-04-14	653,400	12일	관심
□□□□	□□지사	등록전환	1	2016-04-16	1,912,9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8	2016-04-15	468,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1	2016-04-18	349,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38	2016-04-14	713,9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47	2016-04-18	400,400	8일	관심
●●●●	●●지사	부대기타	41	2016-04-15	66,000	11일	관심
●●●●	●●지사	부대기타	44	2016-04-15	66,0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679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792	2016-04-15	611,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05	2016-04-15	479,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31	2016-04-15	700,7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438	2016-04-16	880,000	10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96	2016-04-15	236,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77	2016-04-15	1,009,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7	2016-04-14	700,7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28	2016-04-15	775,5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29	2016-04-15	1,558,7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5	2016-04-14	1,227,6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89	2016-04-14	883,3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97	2016-04-16	401,5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01	2016-04-18	776,6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18	2016-04-18	1,027,4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46	2016-04-18	476,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52	2016-04-15	1,707,2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75	2016-04-18	619,3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77	2016-04-18	520,3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78	2016-04-18	551,1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81	2016-04-18	539,0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88	2016-04-18	1,238,6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438	2016-04-18	1,445,4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460	2016-04-18	233,2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488	2016-04-18	1,327,7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262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268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분할측량	142	2016-04-15	2,351,8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167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172	2016-04-18	713,9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179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184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0000	0000지사	경계복원	237	2016-04-18	1,056,000	8일	관심
0000	0000지사	분할측량	73	2016-04-15	631,400	11일	관심
0000	0000지사	지적현황	13	2016-04-16	708,400	10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235	2016-04-14	851,4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26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153	2016-04-14	821,7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158	2016-04-14	779,9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167	2016-04-14	1,342,0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168	2016-04-15	333,3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170	2016-04-14	1,563,1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179	2016-04-15	579,7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202	2016-04-14	520,3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지적현황	19	2016-04-15	201,3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27	2016-04-18	349,800	8일	관심
0000	00지사	분할측량	183	2016-04-18	578,6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88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90	2016-04-18	349,8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91	2016-04-18	716,100	8일	관심
0000	00지사	분할측량	146	2016-04-14	3,117,4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12	2016-04-15	468,600	11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57	2016-04-14	339,9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58	2016-04-14	404,8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72	2016-04-14	437,800	12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86	2016-04-18	600,600	8일	관심
0000	00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8	1,050,500	8일	관심
0000	00지사	등록전환	10	2016-04-18	1,307,9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63	2016-04-18	679,8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74	2016-04-18	744,7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90	2016-04-18	357,5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12	2016-04-14	392,7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13	2016-04-14	441,1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17	2016-04-15	675,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6	2016-04-15	543,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13	2016-04-15	453,2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97	2016-04-14	1,083,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35	2016-04-15	826,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40	2016-04-14	1,705,0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91	2016-04-18	530,2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54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81	2016-04-18	349,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90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21	2016-04-14	660,0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48	2016-04-14	574,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	2016-04-15	322,3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72	2016-04-14	684,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34	2016-04-15	915,2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22	2016-04-15	574,2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23	2016-04-15	470,8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26	2016-04-14	201,3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37	2016-04-15	3,777,4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45	2016-04-18	404,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0	2016-04-14	468,6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47	2016-04-14	402,6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73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54	2016-04-15	657,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9	2016-04-14	713,900	12일	관심
●●	●●지사	부대기타	29	2016-04-16	66,0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26	2016-04-15	789,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30	2016-04-14	625,900	12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46	2016-04-18	1,262,8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48	2016-04-18	2,919,4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69	2016-04-18	820,6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270	2016-04-14	1,247,4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59	2016-04-14	354,2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43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7	2016-04-14	619,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77	2016-04-15	364,1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38	2016-04-15	1,865,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44	2016-04-15	520,3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48	2016-04-14	716,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56	2016-04-15	425,7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62	2016-04-16	826,1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63	2016-04-16	518,100	10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11	2016-04-16	1,018,600	10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24	2016-04-16	631,400	10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25	2016-04-16	640,200	10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26	2016-04-16	1,392,600	10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229	2016-04-18	236,5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230	2016-04-18	236,5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231	2016-04-18	236,5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55	2016-04-16	468,6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60	2016-04-18	558,8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32	2016-04-15	402,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07	2016-04-14	280,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40	2016-04-18	1,211,100	8일	관심
○○	○○지사	등록전환	17	2016-04-15	1,216,6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91	2016-04-18	518,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92	2016-04-18	518,1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77	2016-04-18	1,226,5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179	2016-04-16	1,120,900	10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50	2016-04-15	1,101,1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06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50	2016-04-15	660,0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452	2016-04-18	619,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504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195	2016-04-14	536,8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39	2016-04-18	349,8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56	2016-04-15	349,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57	2016-04-18	339,9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84	2016-04-18	636,9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02	2016-04-15	713,9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12	2016-04-15	707,300	11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31	2016-04-18	733,7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78	2016-04-14	168,3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24	2016-04-16	882,200	10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49	2016-04-14	306,9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50	2016-04-16	755,700	10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51	2016-04-15	877,800	11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96	2016-03-28	520,300	29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8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86	2016-03-28	776,600	29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88	2016-03-28	761,200	29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3	2016-04-18	520,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85	2016-04-14	1,106,6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57	2016-04-14	619,3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263	2016-04-18	851,4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311	2016-04-18	932,800	8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경계복원	835	2016-04-15	619,3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경계복원	857	2016-04-14	2,162,6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경계복원	858	2016-04-18	520,300	8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경계복원	860	2016-04-14	600,6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경계복원	864	2016-04-14	826,1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경계복원	865	2016-04-15	275,0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분할측량	546	2016-04-14	930,6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분할측량	606	2016-04-18	497,200	8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분할측량	650	2016-04-18	89,100	8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분할측량	658	2016-04-18	663,300	8일	관심
①①	①①①①지사	분할측량	659	2016-04-18	107,800	8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부대기타	49	2016-04-14	66,0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399	2016-04-18	625,900	8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400	2016-04-14	476,3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451	2016-04-14	532,4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459	2016-04-14	915,2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467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470	2016-04-14	1,298,0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471	2016-04-14	596,2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499	2016-04-14	1,238,6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01	2016-04-15	600,6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02	2016-04-15	1,001,0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05	2016-04-15	625,9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06	2016-04-15	700,7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07	2016-04-14	814,0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09	2016-04-14	4,096,4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90	2016-04-14	518,100	12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594	2016-04-15	518,100	11일	관심
①①	①①①지사	경계복원	1615	2016-04-14	551,1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616	2016-04-14	808,500	12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618	2016-04-18	550,0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619	2016-04-18	850,3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620	2016-04-18	716,100	8일	관심
㉠㉠	㉠㉠지사	경계복원	1664	2016-04-18	600,6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767	2016-04-18	91,300	8일	관심
㉠㉠	㉠㉠지사	분할측량	930	2016-04-14	123,200	12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421	2016-04-18	1,014,200	8일	관심
㉠㉠	㉠㉠지사	지적현황	430	2016-04-18	822,800	8일	관심
계		726건			546,761,400		

[표 2] ◎◎지사 ERP시스템 측량장비 점검부 등록 및 지시장 점검 대장 현황

[illegible]

※ ERP시스템 측량(전산)장비 점검부 등록 현황 및 지사장 측량(전산) 점검 대장 재구성

이에 위 지사에서는 [표 1], [표 2] 현황과 같이 「측량장비 관리요령」에 따라 측량장비 관리대장과 사용자의 측량장비 점검을 ERP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지사장의 측량(전산)장비 점검은 수기대장에 작성 관리하고 있어 행정업무의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표 1] 현황과 같이 같은 요령 측량장비 관리대장과 ERP시스템 관리대장이 결재선 등이 서로 상이하다.

또한 「측량장비 관리요령」에서는 자산유지기록 및 자산이동현황을 ERP시스템에서 수불 및 관리사항을 정확히 정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표 2] 현황과 같이 ERP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부장, 지사장은 점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측량장비 관리대장 및 지사장 수기 측량(전산)장비 점검 등 관리방법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측량장비 관리요령」 및 ERP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측량(전산)장비 관리대장 및 점검방법이 효율적으로 관리·점검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目目目目실장)은 측량장비 관리대장 및 지사장·지역본부장의 수기 측량(전산)장비 점검 등 관리방법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측량장비 관리요령」 및 ERP시스템 점검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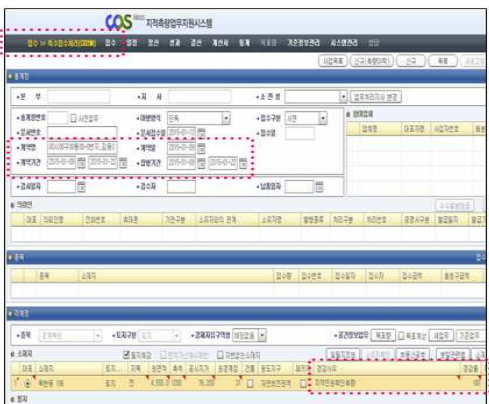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측량민원 해결을 위해 접수된 민원 업무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6조(민원사항의 처리) 확인측량의 절차²⁾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특수업무(경계복원)로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4. 12. 31. 일부 개정된 같은 지침 중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련 접수 방법을 알려³⁾드리고 업무처리에 참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측량민원 확인측량 접수 처리 방법

구분	확인측량 접수 처리	업무지원시스템(COS) 확인측량 접수 처리 화면
1	• 접수 - 특수업무(경계복원)	
2	• 계약명 및 계약일 - 민원소재지, 민원인 / 민원접수 일자 입력	
3	• 계약기간 및 집행기간 - 민원접수 일자부터 측량민원처리기간(14일) 입력	
4	• 경감사유 - 지적민원 확인측량(경감을 100%)_신설	

2) 제6조 제6항 3.확인측량의 절차 가.민원처리 담당자는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특수업무(경계복원)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확인측량 접수 방안 알림(○○○○처 업무연락: 2015. 1. 13.)

[별표] 측량민원 확인측량 및 무료경감 실적 누락 현황(2015. 1. 1.~2016. 4. 21.현재) 따로붙임 참조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와 [별표] 현황과 같이 측량민원 확인측량 47건 (34,804,100원)을 업무지원시스템(COS) 접수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무료 경감 봉사실적(34,804,100원)이 누락 되는 등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무료경감 실적 34,804,100원이 누락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및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련 접수 절차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에 대하여 재강조 지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을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및 업무지원시스템(COS)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료경감실적이 누락 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측량민원 확인측량 및 무료경감 실적 누락 현황(2015. 1. 1.~2016. 4. 21.현재)

구분	기관	대상토지	완료분류	건수	수량	면적(㎡)	수수료적용금액	봉사금액(누락)
2015년	■■■지사	●●●시 ●●동 산19	확인측량	1	1	1,129	573,000	573,000
		●●●시 ●●동 79-3	확인측량	1	1	350	628,000	628,000
	■■■■지사	●●●시 ●●읍 ■■■리 492-1	확인측량	1	1	1,033	907,500	907,500
		●●●시 ■■■읍 ◇◇리 396-6	확인측량	1	1	37	621,500	621,500
		●●●시 ◇◇읍 ◆◆리 174-20	확인측량	1	1	124	581,900	581,900
		●●●시 ▲▲읍 ▲▲리 596-4	확인측량	1	1	390	690,800	690,800
	■■■■지사	□□시 ■■■구 □□로3가 122-5	확인측량	1	2	5,407	511,000	511,000
		□□시 ■■■구 ■동 225-51	확인측량	1	1	146	529,000	529,000
		□□시 ■■■구 □□로3가 108-71	확인측량	1	1	79	565,000	565,000
		□□시 ■■■구 ■■■동 63-4	확인측량	1	3	154	565,000	565,000
	■■■■지사	■■■■군 ■■■면 ■■■리 720-1번지	확인측량	1	1	370	545,000	545,000
	■■■■지사	■■■■시 ■■■면 ■■■리 274-46	확인측량	1	1	213	300,000	300,000
	■■■■지사	■■■■시 ■■■읍 ■■■리 504	확인측량	1	1	397	419,000	419,000
		■■■■시 ■■■면 ■■■리 329-1	확인측량	1	1	1,443	802,000	802,000
		■■■■시 □□동 3-4	확인측량	1	1	686	727,000	727,000
		■■■■시 ▲▲면 ▲▲리 354-6	확인측량	1	1	539	419,000	419,000
		■■■■시 ▲▲동 662-4	확인측량	1	1	261	459,000	459,000
		■■■■시 ▲▲면 ▲▲리 52-2	확인측량	1	1	112	353,000	353,000
	■■■■지사	■■■■시 ◇◇면 ◆◆리 산36-6	확인측량	1	1	7,028	532,400	532,400
	▲▲지사	▲▲시 ●●면 ◇◇리 318	확인측량	1	1	935	715,000	715,000
	△△지사	△△군 ○○면 ○○리351-4	확인측량	1	1	528	545,000	545,000
	▶▶지사	▶▶시 ○○동 508-11	확인측량	1	1	443	540,000	540,000
	▷▷지사	▷▷시 ○○구 ○○동 459-6	확인측량	1	1	658	727,000	727,000
		▷▷시 ○○구 ○○동 776-2	확인측량	1	1	644	727,000	727,000
		▷▷시 ○○구 ○○동 665-4	확인측량	1	1	1,131	825,000	825,000
	▼▼▼지사	▼▼시 ○○면 ○리 843	확인측량	1	1	3,409	1,320,000	1,320,000
	▽▽지사	▽▽시 ●●동 527	확인측량	1	1	3,222	1,105,000	1,105,000
	◀◀지사	◀◀시 ●●면 ▲▲리 751-1	확인측량	1	1	650	727,000	727,000
	◁◁지사	◁◁시 ▲▲면 ▲▲리 16-1	확인측량	1	1	6,293	1,830,000	1,830,000
		◁◁시 ▲▲동 1135	확인측량	1	1	593	693,000	693,000
	◆◆◆지사	◆◆시 ■■■면 ■■■리 1168	확인측량	1	1	5,853	1,145,000	1,145,000
		◆◆시 ■■■면 ■■■리 180-4	확인측량	1	1	5,633	1,668,000	1,668,000
		◆◆시 ■■■면 ■■■리 138	확인측량	1	1	495	628,000	628,000
	◇◇지사	◇◇시 ■■■읍 ■■■리 174-4	확인측량	1	1	426	545,000	545,000
		◇◇시 ■■■읍 ▲▲리441-2	확인측량	1	1	546	628,000	628,000
		◇◇시 ▲▲면 ▲▲리 316	확인측량	1	1	522	628,000	628,000
		◇◇시 ○○면 ■■■리 산 243	확인측량	1	1	1,686	309,000	309,000
		◇◇시 ■■■면 ■■■리 278-5	확인측량	1	1	5,901	1,717,000	1,717,000
2016년	◆◆지사	□□시 ■■■구 ■■■동 20-9	확인측량	1	1	370	693,000	693,000
	●●지사	●●시 ○○읍 ○○리 809-3	확인측량	1	1	92	546,000	546,000
		●●시 ○○동 625-2	확인측량	1	1	112	546,000	546,000
	◇◇◇지사	◇◇시 ○○면 ■■■리 974-3	확인측량	1	1	990	853,000	853,000
	○○○○지사	○○시 ■■■동 71-152	확인측량	1	1	884	751,000	751,000
		○○시 ■■■동 552-1	확인측량	1	1	989	853,000	853,000
	■■■■지사	○○시 ■■■읍 ■■■리 산59	확인측량	1	1	1,712	591,000	591,000
		■■■■시 ■■■동 397	확인측량	1	1	1,815	1,110,000	1,110,000
	○○○지사	○○○시 ■■■동 702-1	확인측량	1	1	2,023	1,110,000	1,110,000
계				47	47		34,804,100	34,804,100

※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및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재구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활용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2014년 7월 7일 완료하여 바로처리센터 업무처리 실적분석 추가개발, 콜 센터 상담 추가개발, 성과검사 기능(온라인 성과작성)고도화 등을 개선하여 현업의 업무 처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되도록 하였다.

「지적측량 시행규칙」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제4항에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여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선으로 말소한다),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지적측량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처에서는 지적측량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2013. 7. 8.부터 2014. 7. 7.까지 1년간 추진하여 지적측량업무 성과검사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지적측량업무시스템을 추가개발하고 완료보고회 및 사용자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업에 신속한 업무적용을 위하여 각 지역본부 사내강사를 활용해 고도화된 지적측량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설명서를 공사 사내포털의 “측량업무시스템 Cop”에 게재하여 활용 하도록 하였다.

[표 1] 지적측량 업무시스템 자체 교육 현황

(2014. 7. 7. 이후)

(경기지역본부)

연도	교육일자	횟수	교육인원	교육내용	사내강사	비고
2014	7. 14. 8. 04. 8. 18. 8. 19. 8. 20.	5	103	- 온라인 성과검사(수치경계, 분할, 지상경계점등록부) - 온라인 성과검사 자료입력	한○○, 이○○, 이○○, 강○○, 이○○	
2015	8. 24. 8. 25.	2	53	- 온라인 성과검사 결과도 작성 - MOS 온라인성과검사 및 일반결과도 작성법	이○○, 이○○, 강○○, 이○○	
합계		7	156			

※ □□□□□처 자료 제공 재구성

[표 2] 지적측량 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활용 실적(경기지역본부)

(2014. 7. 7. 이후)

(이동지 측량 제외)

기관명	2014년도			2015년도			비고
	완료건수	온라인 방식	비율(%)	완료건수	온라인 방식	비율(%)	
■□□□지사	906,606	0		881,830	0		
□□□□지사	509,538	0		583,214	0		
■□□□지사	611,576	10,106	1.7	722,742	66,504	9.2	
□□□□지사	1,332,362	0		1,429,836	1,304	0.1	
□□□□지사	163,000	0		326	0		
□□□□지사	579,954	326	0.1	680,362	0		
□□□□□□지사	5,868	0		1,257,708	0		
□□□□□□지사	1,081,342	0					
□□□□□□지사	162,022	2,934	1.8	168,542	9,780	5.8	
◆◆◆◆지사	254,606	0		310,678	4,890	1.6	
◇◇◇◇단				83,782	10,106	12.1	
◆◆◆◆지사	281,012	0		383,050	0		
●●●●지사	486,066	8,802	1.8	632,766	107,906	17.1	
○○○○○지사	400,980	0		472,374	326	0.1	
⊙⊙⊙지사	405,870	370,336	91.2	368,706	360,556	97.8	
◎◎◎지사	655,586	21,190	3.2	763,818	0		
●●●지사	461,942	0		413,694	23,146	5.6	
●●●지사	1,143,282	0		1,236,518	0		
●●●지사	521,600	0		669,278	0		
●●●지사	288,184	0		329,260	0		
●●●지사	200,490	0		181,256	0		
●●●●지사	360,882	65,852	18.2	420,540	18,582	4.4	
●●●지사	904,324	1,630	0.2	999,190	111,492	11.2	
●●●지사	176,040	0		177,670	0		
●●●지사	656,238	0		785,008	0		
■□□□지사	718,830	609,620	84.8	851,838	815,000	95.7	
□□□□□지사	276,122	0		359,904	652	0.2	
□□□□□지사	342,300	325,674	95.1	342,300	339,692	99.2	
■□□□지사	263,082	0		295,356	0		
■□□□지사	734,478	0		708,398	0		
□□□□지사	324,044	0		387,614	0		
△△△△지사	296,008	8,802	3.0	294,704	0		
△△△지사	1,153,062	32,600	2.8	1,306,934	759,580	58.1	
합계	16,659,310	1,457,872	9.0	18,501,211	2,629,516	15.0	

※ □□□□□처 자료제공 재구성

따라서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고도화된 지적측량성과 검사 기능(온라인 성과작성)을 [표 1] 현황과 같이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 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 2] 현황과 같이 고도화된 지적측량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활용실적이 2014년 9.0%, 2015년 15.0%로 극히 저조하게 활용하는 등 지적측량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활용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 업무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운영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업무 시스템(온라인 성과작성) 활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반환)

제 목 지적측량 장기미결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고객의 지적측량신청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신청된 업무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의 연기(서면)신청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수료의 반환) 5호에 따르면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며, 의뢰인이 서면⁴⁾으로 측량연기를 요청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일자가 도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별표] 지적측량 장기 미결업무 연기 처리 현황(□□지역본부)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별표] 현황과 같이 69건 430필 158,489,100원에 대하여 최초 측량예정일로부터 최장 446일 동안 서면 연기 없이 전화통화로만 연기하는 등 지적측량 장기미결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4) 글씨를 쓴 지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 장기미결업무 69건 430필 158,489,100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 또는 보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장기미결에 대한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지적측량 장기 미결업무 연기 처리 현황(□□지역본부)

(2016. 4. 25. 현재)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번호	지사	소관청	접수일자	종목	번호	소재지	수량	금액	초과 일수	연기 구분	연기사유
1	■■■지사	▷▷군	2015-07-06	등록전환	1	■■■면 ◇◇리 산132-111	3	1,304,600	294	전화	본인연기
2	■■■지사	▷▷군	2016-01-15	분할측량	64	■■■면 ◇◇리 산185-42	7	2,486,000	101	전화	등록사항정정
3	■■■지사	▷▷군	2016-01-15	분할측량	65	■■■면 ◇◇리 430-8	2	820,600	101	전화	등록사항정정
4	□□□□지사	▶▶구	2015-11-26	경계복원	4	■■■동 674-22	1	783,200	100	전화	본인연기
5	■■■지사	△△시	2015-11-19	지적현황	7	■■■읍 ◇◇리 141-12	2	686,400	158	전화	건물 미철거
6	■■■지사	△△시	2015-11-19	분할측량	11	■■■읍 ◇◇리 142-16	9	4,662,900	158	전화	건물 미철거
7	■■■지사	△△시	2015-11-11	지적현황	5	■■■읍 ◇◇리 490-15	6	1,324,400	166	전화	옹벽미공사
8	■■■지사	△△시	2015-10-13	경계복원	6	■■■동 362-9	1	690,800	195	전화	본인연기
9	■■■지사	△△시	2015-11-25	분할측량	12	■■■면 ◇◇리 산22-1	6	2,399,100	152	전화	본인연기
10	■■■지사	△△시	2015-05-27	지적현황	1	■■■읍 ◇◇리 24-6	182	47,062,400	334	전화	본인연기
11	■■■지사	△△시	2014-12-15	분할측량	2	■■■동 47-32	4	2,179,100	497	전화	본인연기
12	■■■지사	△△시	2016-01-06	지적현황	106	■■■읍 ◇◇리 449-1	1	354,200	110	전화	본인연기
13	■■■지사	△△시	2016-01-11	경계복원	142	■■■읍 ◇◇리 565-1	3	1,764,400	105	전화	본인연기
14	■■■지사	△△시	2016-01-11	분할측량	139	■■■읍 ◇◇리 565-1	4	1,865,600	105	전화	본인연기
15	■■■지사	△△시	2016-01-15	경계복원	165	■■■동 197-9	1	592,900	101	전화	건물철거
16	■■■지사	△△시	2016-01-15	분할측량	161	■■■동 197-9	2	946,000	101	전화	건물철거
17	■■■지사	▽▽시	2015-12-28	분할측량	36	■■■면 ◇◇리 633-4	6	2,880,900	104	전화	분할선 접촉
18	■■■지사	▽▽시	2015-12-22	경계복원	23	■■■읍 ◇◇리 산196-1	1	1,267,200	110	전화	등록사항정정
19	■■■지사	●●●●소	2015-12-31	경계복원	16	■■■읍 ◇◇리 318	1	1,997,600	116	전화	본인연기
20	■■■지사	○○○○시	2015-11-24	분할측량	11	■■■면 ◇◇리 산6-8	7	3,017,300	153	전화	본인연기
21	■■■지사	●●●●소	2015-10-20	경계복원	1	■■■읍 ◇◇리 335	1	799,700	188	전화	본인연기
22	■■■지사	○○○○시	2015-05-20	분할측량	1	■■■읍 ◇◇리 29-2	5	749,100	341	전화	보완통지
23	■■■지사	○○○○시	2015-02-04	경계복원	1	■■■면 ◇◇리 23-15	1	690,800	446	전화	연기통지
24	■■■지사	○○○○시	2016-01-15	경계복원	68	■■■면 ◇◇리 67-1	1	1,043,900	101	전화	본인연기
25	■■■지사	○○○○시	2016-01-15	분할측량	131	■■■면 ◇◇리 67-1	3	1,485,000	101	전화	본인연기
26	■■■지사	○○○○시	2016-01-15	분할측량	130	■■■동 (589-1)	4	1,078,000	101	전화	본인연기
27	■■■지사	○○○○시	2016-01-15	등록전환	13	■■■동 산82-24	4	2,706,000	101	전화	본인연기
28	■■■지사	◆◆◆시	2015-12-07	분할측량	6	■■■동 산61-3	2	0	115	전화	본인연기
29	■■■지사	◆◆◆시	2015-12-07	등록전환	4	■■■동 산61-3	1	851,400	115	전화	본인연기
30	■■■지사	◆◆◆시	2015-10-20	등록전환	3	■■■동 산29-1	1	1,169,300	119	전화	본인연기
31	■■■지사	◆◆◆시	2015-10-20	분할측량	5	■■■동 산29-1	2	0	119	전화	본인연기
32	■■■지사	◆◆◆시	2015-10-01	분할측량	4	■■■동 산129-1	4	0	132	전화	본인연기
33	■■■지사	◆◆◆시	2015-10-01	등록전환	2	■■■동 산129-1	2	2,337,500	132	전화	본인연기
34	■■■지사	◆◆◆시	2015-09-07	분할측량	3	■■■동 142-56	2	1,045,000	147	전화	본인연기
35	■■■지사	◇◇◇구	2015-09-17	분할측량	1	■■■동 141	2	2,335,300	106	전화	본인연기
36	■■■지사	◆◆◇구	2015-05-26	현황내업품	1	■■■동 559-3	3	260,700	335	전화	본인연기
37	■■■지사	■■■시	2015-08-28	경계복원	1	■■■면 ◇◇리 산4-1	1	412,500	153	전화	본인연기

번호	지사	소관청	접수일자	종목	번호	소재지	수량	금액	초과 일수	연기 구분	연기사유
38	지사	군	2015-12-28	경계복원	119	면 ◇리 207-10	1	605,000	116	전화	본인연기
39	지사	군	2015-11-05	분할측량	6	면 ◇리 209-7	5	1,478,400	116	전화	허가변경
40	지사	구	2015-12-10	분할측량	3	동 산23-2	4	0	95	전화	본인연기
41	지사	구	2015-12-10	등록전환	2	동 산23-2	1	2,390,300	95	전화	본인연기
42	지사	구	2015-08-11	분할측량	2	동 산40	2	0	180	전화	본인연기
43	지사	구	2015-08-11	분할측량	1	동 (331-115)	2	893,200	180	전화	본인연기
44	지사	구	2015-08-11	등록전환	1	동 산40	1	897,600	180	전화	본인연기
45	지사	구	2015-04-10	지적현황	1	동 484-8	31	8,786,800	240	전화	본인연기
46	지사	구	2015-01-05	경계복원	16	동 산40-8	1	507,100	50	전화	지적계협의
47	지사	시	2015-08-21	분할측량	6	면 ◇리 356	9	980,100	249	전화	본인연기
48	지사	시	2015-12-02	등록전환	2	면 ◇리 산22-3	1	1,472,900	146	전화	본인연기
49	지사	시	2015-11-04	부대기타	7	면 ◇리 (143-10)	2	5,500	173	전화	민원건
50	지사	시	2015-10-13	분할측량	4	읍 동 375-2	8	4,180,000	195	전화	보완통지
51	지사	시	2015-09-24	분할측량	2	읍 ◇리 148	2	1,071,400	214	전화	보완통지
52	지사	시	2015-07-24	지적현황	1	동 114-20	1	273,900	276	전화	본인연기
53	지사	시	2015-05-08	경계복원	1	면 ◇리 290	1	1,452,000	353	전화	본인연기
54	지사	읍	2015-10-23	분할측량	2	면 ◇리 915-22	16	8,209,300	190	전화	본인연기
55	지사	읍	2015-10-12	분할측량	1	면 ◇리 915-12	6	3,083,300	195	전화	본인연기
56	지사	읍	2014-09-29	경계복원	2	면 ◇리 270-6	1	759,000	200	전화	본인연기
57	지사	읍	2014-09-26	경계복원	1	면 ◇리 269-3	1	562,100	203	전화	본인연기
58	지사	시	2015-11-09	경계복원	1	읍 ◇리 221-8	2	1,436,600	161	전화	본인연기
59	지사	시	2015-10-27	분할측량	2	읍 ◇리 221-8	7	3,146,000	168	전화	본인연기
60	지사	시	2016-01-05	분할측량	18	동 산30-15	2	0	111	전화	본인연기
61	지사	시	2016-01-05	등록전환	2	동 산30-15	1	947,100	111	전화	본인연기
62	지사	시	2016-01-07	경계복원	16	동 356-15	1	762,300	109	전화	본인연기
63	지사	시	2015-12-17	분할측량	18	면 ◇리 97-1	7	3,644,300	116	전화	본인연기
64	지사	시	2015-11-19	경계복원	9	면 ◇리 657-4	1	690,800	152	전화	본인연기
65	지사	시	2015-07-03	경계복원	2	읍 ◇리 765-7	2	3,073,400	297	전화	연락두절
66	지사	시	2015-04-28	분할측량	2	읍 리 721-1	6	2,907,300	362	전화	소송진행중
67	지사	시	2016-01-04	분할측량	70	면 ◇리 218-1	13	5,245,900	112	전화	본인연기
68	지사	시	2016-01-11	경계복원	131	면 ◇리 산124-4	2	1,111,000	105	전화	본인연기
69	지사	시	2016-01-11	등록전환	16	면 ◇리 산124-4	2	1,866,700	105	전화	본인연기
합계							430	158,489,100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자료 재구성(처 자료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책요구

제 목 비정규직(보조인력) 채용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문 책 대 상 자 ●●●●처 기획경영직 3급 김○○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2013. 6. 28. 보조인력 채용 계획(안)을 수립하고 총 3명의 보조인력(사무보조 2명, 사무실 경비 1명)을 채용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무 및 현장보조인력관리지침」에 따라 서류 심사, 면접시험의 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31. 김○○(사무보조), 이△△(사무보조), 송□□(사무실 경비)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하였다.

「사무 및 현장보조인력관리지침」 제5조, 제6조의 2,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보조인력 중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이며,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반드시 채용직무, 근무장소 및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우수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이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보조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조인력 고용시 근로계약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보조인력 채용직무 및 근무현황

기관	소속	채용직무	성명	입사일	비고
□□지역본부	●●●●처	보조인력(사무보조)	김○○	2013. 8. 1.	사무보조인력 고용중지 발령(2015. 7. 31.) (●●●●처-6712: 2015. 7. 31.) 무기계약직 전환(2015. 9. 1.) (◆◆처-4884: 2015. 8. 31.)
		보조인력(사무보조)	이△△	2013. 8. 1.	사무보조인력 고용중지 발령(2015. 7. 31.) (●●●●처-6712: 2015. 7. 31.)
		보조인력(사무실경비)	송□□	2013. 9. 1.	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처-7248: 2015. 8. 19.) 사무보조인력 고용중지 발령(2015. 8. 31.) (●●●●처-7583: 2015. 8. 31.)

그리고 201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처-4604: 2015.08.20.)에 따라 사무보조 직무인 김○○를 2015. 9.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사직원을 제출한 이△△는 같은 해 7. 31.자 고용중지 발령을 하였고, 사무실 경비 직무인 송□□는 전환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따라 같은 해 8.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 중지되었다.

한편 송□□(이하 ‘구제신청자’라 한다)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며 같은 해 9. 3.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경기 2015부해1417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다.

이에 공사에서 당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공고문이 「사무 및 현장보조 인력관리지침」의 근로조건이 아닌 「정규직 채용확정형 고졸인재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정규직 채용 확정형 고졸인턴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학교에 송부하였고, 근무조건은 [표 2]와 같다.

[표 2] 보조인력 채용 공고문 근무조건 현황

구분	근무조건
보조인력 2년 근무(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2년 근무 → 사무직 7급(을) 전직(총 4년 소요)	
전환조건 (무기계약직)	보조인력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전직조건 (사무직7급(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직절차를 거쳐서 사무직 7급(을)로 전직 조치 (단, 결원 발생시 일정비율) ※ 전직절차: 필기시험과 실무평가 등 내부규정 준용

또한 경기2015부해1417 한국국토정보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위원회 조사 시 위 본부에서는 고졸 추천 채용을 하면서 착오 공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위원회에서는 “위 사건 사용자가 2015. 8. 31.자 이 사건 근로자(구제신청자)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위원회로부터 판정서(심판2과-8730: 2015. 11. 26.)를 받았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위원회 판정서 결과에 따라 구제신청자를 2016. 1. 1.자(◆◆처-7298: 2015. 12. 30.) 위 본부 ●●●●처로 보조인력 인사발령(무기계약직 전환)하였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사무 및 현장보조인력관리지침」에 따른 채용계획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확정형 고졸인재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고졸 우수인재(보조인력) 채용계획 문구가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하여 보조인력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미흡하게 하였다.

그 결과 보조인력 채용업무 과정상의 착오로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 통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장)은 비정규직(보조인력) 채용 업무 과정상 착오로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통지를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미흡하게 처리한 기획경영직 3급 김○○에게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책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지급)

제 목 급여 등 보수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급여 등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규정」 제8조(보수의 계산 등)에 “봉급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고, 신규채용, 승진, 전직, 승급, 감봉 그 밖에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서도 보수는 모두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수의 일할계산은 그 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규정」 제9조(휴가, 휴직자의 보수) 제2항 제4호에 “「복무규정」 제19조(특별휴가) 제1항 제2호 나목(출산의 경우)에 따른 휴가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근로기준법」제74조 제4항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표 1] 승진자 인건비 정산내역

(금액단위 : 원)

직·성명	승진일자	급여 등 정산내역					
		정			오		
		급여	대우수당 대우수당2	효도수당	급여	대우수당 대우수당2	효도수당
4급·김○○	2016.2.26.	3,965,550	176,720 50,540	1,982,770	3,909,000	205,000 58,630	1,954,500
4급·권○○	2016.2.26.	3,925,550	176,720 50,020	1,962,770	3,869,000	205,000 58,630	1,934,500
4급·양○○	2016.2.26.	4,165,550	176,720 53,120	2,082,770	4,109,000	205,000 61,630	2,054,500
4급·구○○	2016.2.26.	3,965,550	176,720 50,540	1,982,770	3,909,000	205,000 58,630	1,954,500
계		16,022,200	911,100	8,011,080	15,796,000	1,057,520	7,898,000

직·성명	승진일자	급여 등 정산내역 (“-회수”)			차액 합계	비 고
		차액 (정-오)				
		급여	대우수당 대우수당2	효도수당		
4급·김○○	2016.2.26.	56,550	-28,280 -8,090	28,270	48,450	
4급·권○○	2016.2.26.	56,550	-28,280 -8,610	28,270	47,930	
4급·양○○	2016.2.26.	56,550	-28,280 -8,510	28,270	48,030	
4급·구○○	2016.2.26.	56,550	-28,280 -8,090	28,270	48,450	
계		226,200	-146,420	113,080	192,860	

☞ 경기중부지사 국토정보직 6급 김인영 (출산휴가: 2015.12.21.~2016.3.19.(90일), 2016.3.20.~ 육아휴직)
 ☞ 유급 기간: 2015.12.21.~2016.2.18.(60일), 무급 기간: 2016.2.19.~2016.3.19.(3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표 2] 출산휴가자 정산내역

(금액단위 : 원)

구 분	정산 월	무급 기간 정산내역(2016.2.19.~2016.3.19.)			비 고
		정	오	차액 (“-회수”)	
급 여	2016. 2월	1,806,200	2,910,000	-1,103,800	
기술수당	2016. 2월	93,100	150,000	-56,900	
대우수당	2016. 2월	136,240	219,500	-83,260	
가족수당	2016. 2월	180,000	290,000	-110,000	
계		2,215,540	3,569,500	-1,353,960	

☞ 급 여: 2.1.~2.25.(25/29일) 승진 전 봉급 + 2.26.~2.29.(4/29일) 승진 후 봉급 일할 계산
 ☞ 대우수당: 2.1.~2.25.(25/29일) 승진 전 대우수당 일할 계산
 ☞ 효도수당: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봉급액의 2분의 1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 1], [표 2] 현황과 같이 승진자 및 출산휴가자에 대한 급여 등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지 않아 과다 및 과소 지급하였다.

그 결과 「급여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등 보수지급 업무에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된 보수 1,500,380원과 과소 지급된 339,280원은 즉시 회수 및 지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건축물 하자검사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2014. 10. 13.에 착공한 ◆◆지사 신사옥을 2015. 6. 29.에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2조(하자검사)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실에서 배포한 부동산관리실무교육교재의 ‘8. 시설유지관리’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즉시 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보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표] 안성지사 신사옥 하자검사 실시 현황

공사구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검사 실시여부
			시작	종료	
전기공사	(주)■□전력	236,830,000	2015. 6. 27.	2016. 6. 27.	1회 실시
가설, 목공, 미장, 유리 도장 수장, 기타공사	(주)■■■■■건설	530,569,402	2015. 6. 26.	2016. 6. 25.	1회 실시
조적, 석공사, 타일, 금속, 창호, 조경, 토목, 기계설비		875,065,851	2015. 6. 26.	2017. 6. 25.	X
파일및지정, 방수, 지붕 및 환통공사		196,691,901	2015. 6. 26.	2018. 6. 25.	X
철근콘크리트공사		363,086,846	2015. 6. 26.	2020. 6. 25.	X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신사옥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1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과는 달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공사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였음에도 신사옥의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련 사규에서 정한바와 달리 사옥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수기계약 등록) 소출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계약규정」 제9조 제1항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5조(계약서의 작성)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조건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46조(전자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예외조건에 의해 추정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 본부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실적 등록 현황 따로붙임 참조

그런데도 □□지역본부에서 2015. 1. 1.에서 2016. 4. 27.까지 계약실적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별표] 현황과 같이 총 56건(1,438,549,201원)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6조⁵⁾의 예외사항과 관련한 총 28건(112,663,466원)을 누락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수기계약 등록)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 누락된 수기 계약부분의 계약체결 관련사항은 즉시 등록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 5) ① 계약담당자는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2조에 따른 계약 및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매매계약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본부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실적 등록 현황 (2015. 1. 1. ~ 2016. 4. 27.)

기관명: □□지역본부

(단위: 원/ V.A.T 포함)

연번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등록여부
1	물품	□□지사 준공식 타올 구매	2015.7.28~8.6	3,762,000	◆◆◇◇대리점	○
2	공사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사	2015.12.1~12.28	35,331,300	(주)◇◇◇	○
3	공사	□□지사 주차장 공사	2015.10.20~11.6	14,058,111	(주)◆◆◆◆	○
4	용역	사명변경 본부 사옥 간판 교체	2015.5.11~5.29	7,920,000	(주)●●●●●	○
5	용역	□□지사 신축사옥 간판 설치	2015.6.9~6.26	10,560,000	(주)●●●●●	○
6	물품	□□지사 신축사옥 블라인드 설치	2015.6.25~7.10	5,830,000	(주)●●●●●	○
7	물품	본부사옥 블라인드설치	2015.7.17~7.31	3,828,000	(주)●●●●●	○
8	물품	현장업무용 락카 구입	2015.3.26~4.15	5,500,000	(주)◇◇	○
9	물품	현장업무용 장갑 구입	2015.3.26~4.15	7,975,000	(주)○○○	○
10	물품	업무용봉투 제작(1차분)	2015.5.12~5.29	8,942,560	㈜○○사	○
11	물품	업무용봉투 제작(2차분)	2015.11.27~12.14	5,571,630	㈜○○사	○
12	용역	□□ 신축사옥 실내 사인물 설치	2015.7.10~7.17	4,994,000	○○○○○임	○
13	용역	□□□□2지구 기준점 매설용역	2015.2.11~12.31	19,586,500	지적시니어클럽	○
14	용역	□□□□미사지구 지적기준점 매설용역	2015.8.6. ~2016.12.31	35,301,519	●●●●통신	○
15	용역	지적기준점 제작 및 설치용역	2015.2.13~11.30	3,905,000	(주)●●	○
16	용역	□□□□옥길지구 지적기준점 매설용역	2015.7.29. ~2016.12.31	13,143,272	●●●●기술단	○
17	물품	삼각보조점 구매	2015.2.26~3.6	8,250,000	(주)●●●●●물자	○
18	물품	측량결과부 커버 L자화일 구입	2015.7.7~7.17	8,910,000	●●기획	○
19	물품	토탈스테이션 배터리 구매	2015.9.14~9.25	1,386,000	○○○○○○○○○○코 리아	○
20	용역	본부 사옥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	2015.2.10~1.31	2,376,000	(주)●●●●●방재	○
21	용역	□□지역본부 사옥관리 용역	2015.3.1~12.31	330,227,080	(주)●●●●●시스템	○
22	용역	□□지역본부 사옥관리 용역	2015.3.1~2.29	397,888,463	(주)●●●●●시스템	○
23	용역	사명변경에 따른 홍보콘텐츠 제작	2015.5.18~5.29	7,920,000	●●컴퍼니	○
24	용역	사명변경에 따른 내외부 사인물 교체	2015.5.11~5.29	1,815,000	(주)●●●●●	○
25	용역	시스템에어컨필터 청소	2015.6.5~6.12	1,324,400	(주)□□□	○
26	용역	전 기관 사옥관리용역 원가계산	2016.1.22~2.5	1,000,000	□□□□□연구원	○
27	용역	2016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 사옥관리 용역	2016.3.1~12.31	375,821,100	□□□□에스	○
28	물품	창사기념일 본부장 표창패 제작	2015.6.29 ~7.8	2,758,800	□□종합상사	○
29	용역	□□□□□지사 주차장 포장공사 인허가	2015.10.8~10.26	5,088,000	□□□□□C	×
30	물품	공기구비품 구입(옷장 외)	2015.1.26~2.6	3,116,300	(주)▲▲▲▲▲전시장	×
31	물품	공기구비품(냉방기외) 구입	2015.6.29~7.3	6,894,000	(주)▲▲프라자	×
32	물품	공기구비품(장비보관함외) 구입	2015.6.23~7.3	1,557,600	▲▲▲공구	×
33	물품	□□□□□지사 블라인드 설치	2015.9.15~9.22	1,306,800	○○○패션	×
34	공사	●●지사 배관설비 공사	2016.1.11~2.5	3,190,000	□□□설비	×
35	공사	●●지사 사무실 칸막이 공사	2016.1.11~2.5	10,945,000	□□□□포	×
36	물품	●●지사 공기구비품 구입	2016.2.2~2.28	2,909,500	□□□□□처	×

연번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등록여부
37	물품	현장업무용 황사마스크 구입	2015.3.27~4.15	5,940,000	㉨㉨㉨㉨스	×
38	물품	현장업무용 우의 구입	2015.3.27~4.15	3,234,000	㉨㉨우의	×
39	물품	현장업무용 선크림 구입	2015.4.30~5.8	10,990,000	㉨㉨㉨㉨㉨역점	×
40	용역	사명변경에 따른 배너 제작	2015.3.11~3.13	2,046,000	㉨㉨마을	×
41	공사	●●●●역 출구 방향표지판	2015.5.11~5.29	2,500,000	㉨㉨사	×
42	용역	■□지사 준공식 행사관련 비품 이전 및 설치	2015.8.4~8.7	1,760,000	◀◀◀◀에프	×
43	용역	●●●●지구 지적기준점 설치용역	2015.1.21~12.31	4,063,400	지적시니어클럽	×
44	용역	■□□□지구 지적기준점 설치용역	2015.1.21~12.31	5,237,100	지적시니어클럽	×
45	용역	■□□□지구 지적기준점 매설용역	2015.7.29~ 2016.12.31	5,213,476	(주)●●●●기술단	×
46	용역	■□□□지구 지적기준점 매설용역	2012.5.21~12.31	3,502,400	◁◁◁◁통신	×
47	용역	■□□□2지구 지적확정측량용역	2013.6.13~12.31	3,654,200	지적시니어클럽	×
48	용역	□□□□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	2014.11.17~ 2015.11.16	4,283,400	지적시니어클럽	×
49	용역	●●●●지구 지적기준점 설치용역	2015.1.21~12.31	2,308,790	지적시니어클럽	×
50	물품	현장용 펜컴퓨터 부품구매	2015.8.18~8.18	3,723,000	◆◆시스템	×
51	물품	전문직원 명패 제작	2015.1.19~1.23	1,573,000	▲▲크리스탈	×
52	물품	지사 사무실 환경개선용 매트 구입	2015.12.2~12.18	1,808,400	(주)△△	×
53	공사	본부 사옥정문 대리석 교체	2015.11.23~12.25	5,544,000	▼▼▼인테리어	×
54	용역	본부사옥 직수펌프 수리	2015.11.12~12.18	5,720,000	▽▽▽▽모터	×
55	용역	본부 급수배관 보수	2016.1.18~1.29	1,386,000	▽▽▽▽모터	×
56	공사	4층 칸막이 및 스크린 이설 공사	2016.3.3~3.7	3,169,100	■ ■ ■ ■ ■ G	×
계			56건	1,438,549,201		

※ 전자조달시스템 통계자료 계약실적 조회 현황 재구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 제3항은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7조 제4항 2호는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 8천만 원 이하의 공사는 검수를 완료한 후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고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표]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현황

공사건명	공사금액	계약일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일	검수일
정화조 보수 공사	2,794,000	'14. 7. 31.	'14. 7. 31.	'14. 8. 4.
건물외벽 방수공사	3,080,000	'14. 9. 26.	'14. 9. 26.	'14. 10. 1.
건물 창호공사	3,124,000	'14. 11. 19.	'14. 11. 19.	'14. 11. 25.
시명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2,827,000	'15. 5. 21.	징구하지 않음	'15. 5. 26.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검수를 실시하지 않고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였으며, 2014. 11. 19.에 계약한 건물창호공사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증금을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등 관련규정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보증금 및 보증각서 징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직원 근태처리(출·퇴근 정정)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직원들의 근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태관련 수기장부를 폐지하고 전산시스템(시범운영 테스트 완료 2015. 5. 6. ~ 6. 30.)을 도입하여 출·퇴근 상황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⁶⁾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정관 제28조제2항에 따라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복무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 성실의 의무에는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퇴근 등록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지시하였으며 근태관련 매뉴얼을 통한 기관별 전달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5. 7. 1.에서 2016. 4. 20.까지 지사 개인별 근태현황(출·퇴근 정정)을 점검 한 결과 카드 미지참, 카드분실, 카드리더기 오류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한 근태 정정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 ●●●●●실-4161(2015. 5. 7.), ●●●●●실-4702(2015. 5. 26.), ●●●●●실-5445(2015. 6. 16.)호로 문서 시행

아래 [표] 현황과 같이 근태관련 중요 기초자료가 되는 개인별 출·퇴근 정정 사항을 짧게는 2일, 길게는 27일이 경과한 후 정정하는 등 개인별 근태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직원 출·퇴근 정정 현황 (2015.7.1.~2016.4.20.)

기관명: □□지역본부 ●●지사

근무일자	수정일자	직급	성명	근태구분	정정시간	비고
2015-10-22	2015-10-26	보조인력	최○○	퇴근	20:10	4일
2015-12-09	2015-12-15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7:30	6일
2016-01-15	2016-01-18	전문직	윤○○	퇴근	17:12	3일
2016-01-20	2016-02-16	채용형인턴	이○○	퇴근	18:10	27일
2016-01-21	2016-02-16	채용형인턴	이○○	퇴근	18:15	26일
2016-01-22	2016-02-16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15	25일
2016-01-22	2016-01-25	보조인력	노○○	퇴근	18:10	3일
2016-02-02	2016-02-15	국토정보직 5급	윤○○	출근	07:41	13일
2016-02-12	2016-02-15	국토정보직 3급	심○○	퇴근	17:20	3일
2016-02-26	2016-03-09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30	11일
2016-03-07	2016-03-09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30	2일
2016-04-01	2016-04-14	국토정보직 5급	박○○	출근	07:50	13일
2016-04-12	2016-04-14	국토정보직 5급	박○○	퇴근	18:20	2일
2016-04-15	2016-04-18	보조인력	노○○	출근	08:22	3일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총무관리 출·퇴근 정정 현황 재구성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개인별 복무관리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업무처리(성과도 지연발급 및 검사요청 지연)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측량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지적사업처장·지사장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경우 측량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에 의하여 수수료 정산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검사요청 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도를 접수한 일자를 업무완료 일자로 본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완료 통보일자를 업무완료일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공부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의 경우 업무완료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일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표] 지적측량성과도 지연발급 및 검사요청 지연 현황

(금액단위: 원)

접수일자	종목	접수 번호	토지소재지	정산일자	검사요청	성과도발급 (완료일자)	측량자	비고
2015-04-17	현황	31	◆◆구 ◇◇동 397-1	2015-04-28		2015-04-29	김○○	성과도 지연
2015-07-31	현황	66	◆◆구 ▷▷동 산17	2015-08-17		2015-08-18	김○○	성과도 지연
2015-07-30	분할	295	◆◆구 ●●●동 736-66	2015-08-13	2015-08-17	2015-08-19	김○○	검사요청 지연
2015-07-31	분할	296	◆◆구 ●●●동 1096-7	2015-08-13	2015-08-17	2015-08-19	김○○	검사요청 지연
2015-07-31	분할	297	◆◆구 ●●●동 382-37	2015-08-13	2015-08-17	2015-08-19	김○○	검사요청 지연
2016-02-24	분할	94	◆◆구 ●●●동 3-158	2016-03-21	2016-04-01	2016-04-08	김○○	검사요청 지연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시 ◆◆구 ◇◇동 397-1 번지 외 1건은 정산일자보다 지연하여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하였으며, ○○시 ◆◆구 ●●●동 736-66번지 외 3건은 정산을 완료하고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4~11일 지연하여 검사요청 하는 등 지적측량업무 처리를 소홀히 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및 공부정리분에 대한 성과검사 요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적측량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교육훈련비(운임) 정산 소출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공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훈련규정」 및 「교육훈련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규정」 제3조(의무와 책임)에 “직원은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가짐에 따라 공사에서 주관하는 사내·사외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훈련규칙」 7조(교육여비 지급 기준)에는 “연수교육 등 내·외부 교육 과정 대상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교육훈련규정」 제11조 또는 「여비규정」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비규정」 제6조(여비의 결제 및 정산)에 따라 국내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고,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고 여비정산청구서를 작성하여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지사 교육훈련비 집행 현황 따로붙임 참조

그러나 [별표] 현황과 같이 2015. 1. 1.에서 2016. 3. 31.까지 지사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수교육을 제외한 총 31회(2015년 공간정보시물레이션 교육 등 26회, 2016년 수수료교육 등 5회) 교육훈련비를 집행하면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 적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등 교육훈련비(운임) 정산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교육훈련규정」 및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지사 교육훈련비 집행 현황 (2015. 1. 1. ~ 2016. 3. 31.)

기관명: □□지역본부 ■■■■■지사

(단위: 회 / 원)

연번	출장자		출장일	출장목적	교육훈련비 지급내역			비고
	직	성명			운임	숙박비	계	
1	6급	이○○ 등 2명	2015.1.12.	공간정보시물레이션 교육	9,600		9,600	2015년
2	담당관	백○○	2015.1.19.~1.23.	전문직원 직무교육	24,000		24,000	
3	인턴	신○○	2015.1.29.~1.30.	기초통계학 특강	62,200	50,000	112,200	
4	6급	김○○ 등 2명	2015.2.27.	공간정보시물레이션 교육	3,600		3,600	
5	5급	박○○ 등 4명	2015.3.12.	직장교육	20,000		20,000	
6	5급	손○○ 등 22명	2015.3.13.	직장교육	105,000		105,000	
7	5급	박○○ 등 2명	2015.3.26.~3.27.	지적측량접수담당자 워크숍	84,800		84,800	
8	5급	임○○	2015.5.11. ~5.15.	국어전문교육	17,000		17,000	
9	5급	노○○	2015.6.15.~6.19.	국어전문교육	13,500		13,500	
10	3급	손○○ 등 2명	2015.6.15.	공공기관 기능조정 현안 공유회의	10,600		10,600	
11	5급	이○○ 등 4명	2015.7.2.	직장교육	21,200		21,200	
12	5급	박○○	2015.7.6.	침수흔적도 교육	6,300		6,300	
13	6급	조○○ 등 2명	2015.7.7.~7.8.	직장교육	25,200		25,200	
14	6급	김○○	2015.7.6.~7.13.	통계교육원 교육	47,400		47,400	
15	5급	박○○ 등 2명	2015.7.13.	직장교육	12,600		12,600	
16	4급	노○○ 등 5명	2015.7.20.	직장교육	25,200		25,200	
17	6급	김○○	2015.7.22.	직장교육	6,300		6,300	
18	5급	김○○	2015.7.27.	직장교육	6,300		6,300	
19	5급	장○○	2015.8.24.	직장교육	6,300		6,300	
20	6급	김○○	2015.8.28.	직장교육	6,300		6,300	
21	3급	손○○	2015.9.1.	임금피크제설명회	66,000		66,000	
22	5급	노○○	2015.9.17.~9.18.	“나는서무다”교육	16,800		16,800	
23	5급	장○○	2015.10.21~10.23.	생애(미래)설계교육	5,400		5,400	
24	5급	노○○	2015.11.17.	서무 직무교육	18,900		18,900	
25	2급	박○○	2015.12.11.	퇴직연금 교육	18,900		18,900	
26	5급	노○○	2015.12.17.~12.18.	COS 연도이월 교육	71,700		71,700	
27	2급	박○○	2016.1.4.	수수료교육	12,600		12,600	2016년
28	5급	노○○	2016.2.24.	원문정보공개교육	10,300		10,300	
29	6급	김○○	2016.3.18.	정보보안 교육	6,300		6,300	
30	2급	박○○	2016.3.23.	관리자 워크숍	36,600		36,600	
31	6급	김○○	2016.3.25.	행정담당자 교육	6,300		6,300	
계		31 건			783,200	50,000	833,200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회계관리 각계정원장 내역 재구성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고객센터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대국민 고객센터 향상을 위하여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현장 교부제도 및 성과도 배달 등 효율적인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지적측량의뢰 등) 제2항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인에게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공부등본발급신청을 지적소관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이 하는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서 여백에 “신청위임” 이라고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지적측량의뢰서 접수) 제1항에 “접수자는 의뢰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측량예정일자 및 공부정리신청과 등본발급의 위임 등의 내용을 의뢰서에 기재한다.” 그리고 ②항에 “고객이 지적공부 정리를 위임한 경우 수입증지를 붙인 관련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고 되어있다.

또한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12조(민원 1회 방문 처리)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사 내부에서 가능한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공사를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적측량업무를 접수할 때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 및 업무 규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공부정리신청과 등본발급의 위임 등을 설명하고 의뢰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공사의 대국민 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신뢰받는 공사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공사를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1] 2015년 성과도 송부 집계 현황(일반업무)

(단위: 건)

측량종목	지사수령	우편	배달	대행	접수창구수령	현장교부	비고
일)경계복원	18	17	1	0	10	836	
일)기초(도근)	2	0	0	0	0	0	
일)도면작성	0	0	0	0	1	0	
일)등록전환	0	1	0	0	17	0	
일)분할측량	21	6	1	0	443	0	
일)지적현황	31	40	3	0	141	2	
일)현황내업품	1	3	0	0	0	0	
계	73	67	5	0	612	838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가공

[표 2] 2016년 성과도 송부 집계 현황(일반업무)

기간: 2016년01월01일 ~ 2016년04월18일

(단위: 건)

측량종목	지사수령	우편	배달	대행	접수창구수령	현장교부	비고
일)경계복원	2	12	0	0	3	261	
일)등록전환	0	1	0	0	2	0	
일)분할측량	6	5	0	0	86	0	
일)지적현황	4	6	0	0	54	0	
일)현황내업품	2	0	1	0	0	0	
계	14	24	1	0	145	261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가공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1], [표 2] 현황과 같이 2015년 이후 감사일 현재 까지 공부정리분에 대한 성과도 교부의 대행처리 실적이 없으며, 그에 따른 원스톱 측량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적측량고객서비스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및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업무 성과물 등록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측량 정보의 체계적 축적을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 서류를 지적측량현장지원 시스템(이하 ‘MOS’라 한다)에 등록하고 지사장이 주요점검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규정」 제19조(업무의 완료) 제1항 및 제21조(지적측량결과도 검사)에 따르면 “측량자는 측량이 완료되면 수수료 금액을 산출·정산하고,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한다. 이 경우 도면전자결재시스템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결과도 및 성과도는 지사장이 주요점검 사항에 대하여 도면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측량결과도 및 성과도를 도상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MOS 사용자 매뉴얼”(2014. 7. 23.) 취소반환 성과검사에 따르면 의뢰인의 취소 요구로 측량수수료 70%, 90%, 100%(성과제시불능 등)를 반환한 업무는 취소 (반환)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인 측량준비도 파일, 자료조사 (과거 측량기록이 있는 경우의 당해 측량파일 등)와 같은 제반 준비 자료를 MOS에 등록하여 반환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측량 의뢰인의 요구로 취소 및 성과제시불능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취소(반환)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을 MOS에 등록하여 반환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표] 지적측량수수료 반환(70%, 90%, 100%-성과제시 불능) 현황(2014 ~ 2015년)

연도	종목	접수번호	토지소재지	반환율	관련자	등록여부	비고
2014	등록전환	2	■■동 산26	70%	정○○	등록	
	분할측량	105	□□면 ■■리 306-4	90%	이○○	등록	
	분할측량	171	■■■■동 170	90%	손○○	미등록	
	분할측량	169	■■■■동 516	90%	김○○	미등록	
	분할측량	288	■■■■동 283	70%	최○○	등록	
	경계복원	188	■■■■동 893	70%	손○○	등록	
	경계복원	321	■■■■동 515-1	70%	이○○	등록	
	경계복원	50	■■■■동 192-8	70%	최○○	등록	
	경계복원	398	■■■■동 207-32	70%	최○○	등록	
	경계복원	589	◆◆동 223-5	90%	손○○	미등록	
	지적현황	3	■■■■동 381-12	70%	최○○	등록	
	지적현황	86	■■■■동 311-6	90%	김○○	미등록	
	지적현황	104	■■■■동 259	100%	손○○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2015	등록전환	13	◇◇동 산5-6	100%	최○○	등록	성과제시불능
	분할측량	28	◆◆동 219-54	70%	이○○	등록	
	지적현황	109	●●동 44-33	70%	최○○	등록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및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와 현황과 같이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접수 취소된 70%, 90%, 100%(성과제시불능 등)업무 17건 중 4건은 고시된 측량 수수료의 10%를 수입하면서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을 미등록 하였으며, 성과제시불능 등의 사유로 취소(100%)된 업무 1건도 측량성과물(결과도 ZIP파일, GDB 등)을 미등록 처리하여 총 5건(29.4%)의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에 따른 성과물 등록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등록하지 않은 지적측량성과물을 지적측량현장 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시고, 성과물 등록과 관련된 “사용자 매뉴얼”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성과물 등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사무실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 납부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2014. 7. 5.부터 현 사옥(◇◇동 565-3 소재)의 입주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 중 임차료(월 이백일십만원, VAT 별도), 기본 관리비(월 오십만원, VAT 별도), 실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을 매월 임대인(김○○, 김○○)에게 납부하고 있다.

1. 전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임차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임대차 기간중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전기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7조(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부담)에 따르면 “실사용량에 의하여 공사(지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임대인이 발행한 관리비 납부통지서 산출내역에도 실 사용료는 전기검침에 의하여 당월사용량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며 공사에서는 매월 관리비 입금계좌로 송금하고 있다.

2. 상하수도료 납부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는 업종별(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세 대상이 아님에도 임대인은 매월 2,000원에서 3,000원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다.

[표] 전기료, 상하수도 납부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기료(부가세)	상하수도료(부가세)	부가세	비 고
2015년 1월	614,140(61,414)	20,000(2,000)	63,414	
2015년 2월	621,880(62,188)	20,000(2,000)	64,188	
2015년 3월	396,530(39,653)	20,000(2,000)	41,653	
2015년 4월	288,140(28,814)	20,000(2,000)	30,814	
2015년 5월	235,310(23,531)	30,000(3,000)	26,531	
2015년 6월	267,280(26,728)	30,000(3,000)	29,728	
2015년 7월	394,440(39,444)	30,000(3,000)	42,444	
2015년 8월	602,160(60,216)	30,000(3,000)	63,216	
2015년 9월	372,030(37,030)	30,000(3,000)	40,030	
2015년 10월	205,420(20,542)	30,000(3,000)	23,542	
2015년 11월	257,260(25,726)	30,000(3,000)	28,726	
2015년 12월	486,370(48,637)	30,000(3,000)	51,637	
2016년 1월	574,130(57,413)	30,000(3,000)	60,413	
2016년 2월	701,460(70,146)	30,000(3,000)	73,146	
2016년 3월	532,340(53,234)	30,000(3,000)	56,234	695,716

※ 2015~16년 3월 현재 관리비 청구내역 내역 재구성

그러나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2015년 1월에서 2016년 3월까지의 전기료 및 상하수도를 납부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실사용량에 대한 금액만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등 사무실 임대차에 따른 관리비(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납부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임대건물의 임대인(김○○, 김○○)이 매월 발급되는 관리비 납부통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차료 및 기본관리비를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세를 제외하여 납부하고 업체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비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출원인행위(물품품의 및 요구서) 소출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출을 하는 경우 「재무 규정」 및 「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의한 지출을 하고 있다.

「재무규정」 제21조(지출) 및 제39조(지출원인행위)에 따르면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확정된 금액에 대한 변제행위로서만 할 수 있고,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와 부속서류에 지출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결의를 받은 후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사무처리규칙」 제41조(대가의 지급)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 담당은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아 관계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지출원인행위(물품품의 및 요구서) 누락 현황

(2015.1.1.~2015.12.31.)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지출일자	예산과목	적 요	지급액	비 고
2015.03.05.	업무비_도서인쇄비	도근계산부 제본	10,000	법인카드 결제
2015.02.13.	업무비_소모품비	쓰레기봉투 구입	72,000	"
2015.04.30.	업무비_소모품비	쓰레기봉투 구입	47,460	"
2015.05.28.	업무비_소모품비	비누 등 구입	36,250	"
2015.05.29.	업무비_소모품비	쓰레기봉투 구입	36,000	"
2015.06.29.	관리비_소모품비	현판식 떡케익 구입	90,000	"
2015.06.29.	업무비_소모품비	손소독제 구입	60,000	"
2015.08.31.	업무비_소모품비	비누 등 구입	49,700	"
2015.09.22.	업무비_소모품비	각 티슈 구입	8,400	"
2015.08.31.	업무비_소모품비	환경정화 소모품 구입	68,000	"
2015.10.30.	업무비_소모품비	쓰레기봉투 구입	72,000	"
2015.12.21.	업무비_소모품비	청소도구 구입	8,800	"
2015.05.29.	업무비_복리후생비	상반기 체육행사비 집행	251,610	"
2015.12.21.	업무비_복리후생비	하반기 문화행사비 집행	600,000	"
2015.02.13.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277,830	"
2015.03.31.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279,720	"
2015.05.19.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275,400	"
2015.06.04.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229,840	"
2015.07.21.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428,250	"
2015.08.31.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281,520	"
2015.09.22.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203,460	"
2015.10.30.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391,070	"
2015.12.21.	업무비_회의비	직원회의에 따른 다과 구입	384,410	"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추정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재무규정」 및 「회계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지 않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재무규정」 및 「회계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업무용 임차차량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용 임차차량은 차량의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차량관리책임자(지사는 지사장)와 차량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차량관리자(차량관리책임자가 지정)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관리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주유소에서 주행거리에 따른 적당량의 주유를 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효율적인 주유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 차량운행일지 작성 내역

(금액 단위: 원, VAT포함)

정산연월	운행일지 작성 현황			법인카드 주유금액(d)	차액 (c-d)	비 고
	주유금액(c=a+b)	공사부담금(a)	본인부담금(b)			
2015.01월	749,349	739,829	9,520	749,349	0	
2015.02월	637,926	637,926	0	704,123	-66,197	
2015.03월	1,136,913	1,136,913	0	1,136,913	0	
2015.04월	1,159,598	1,159,598	0	1,229,598	-70,000	
2015.05월	771,439	771,439	0	791,439	-20,000	
2015.06월	1,807,892	1,807,892	0	1,804,972	2,920	
2015.07월	1,200,075	1,200,075	0	1,200,075	0	
2015.08월	1,011,789	1,011,789	0	1,008,558	3,231	
2015.09월	1,337,743	1,337,743	0	1,411,833	-74,090	
2015.10월	844,716	844,716	0	844,716	0	
2015.11월	1,126,500	1,126,500	0	1,126,500	0	
2015.12월	753,630	750,130	3,500	753,630	0	
2015년 합계	12,537,570	12,524,550	13,020	12,761,706	-224,136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도 차량 관리자가 차량운행일지에 누락하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효율적인 주유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을 준용하지 않는 등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차량관리자 유류대금 정산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제4조(차량관리자), 제8조(연료공급) 및 「예산집행지침」(차량유지비)에 의하여 차량관리자는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주유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연료공급을 받았을 경우 차량운행 내역 및 연료공급 내역을 차량운행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표] 업무용 임차차량 유류 구입현황

(단위 : 원)

구 분	차량유지비(유류대)	유류대금정산내역	차 액	비 고
2015년 1월	699,760	713,680	-13,920	
2015년 2월	478,810	482,920	-4110	
2015년 3월	828,750	839,430	-10,680	
2015년 4월	931,770	1,465,320	-533,550	
2015년 5월	661,870	666,310	-4,440	
2015년 6월	1,429,350	1,441,090	-11,740	
2015년 7월	1,105,070	1,115,670	-10,600	
2015년 8월	1,082,320	1,019,920	62,400	
2015년 9월	741,680	744,080	-2400	
2015년 10월	1,038,750	1,040,750	-2000	
2015년 11월	987,760	1,002,560	-14,800	
2015년 12월	887,820	828,790	59,030	
2016년 1월	818,340	825,760	-7420	
2016년 2월	539,520	539,620	-100	
2016년 3월	830,880	838,392	-7512	

※ 2015~16년 3월 현재 erp(회계시스템) 각계정원장(차량유지비) 지출내역과 인사시스템 임차차량관리(유류대금 정산) 내역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2015년 1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차량유리지 유류대금 지급내역과 정산내역의 주유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운행일지 등록 소홀로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주유금액 착오 등록 및 주유금액 누락, 주유 할인금액 미적용으로 지출내역이 구입(정산)내역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차량관리자의 차량운행일지 등록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및 「임차차량 업무처리 요령」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측량민원 해결을 위해 접수된 민원업무에 대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6조(민원사항의 처리) 확인측량의 절차⁷⁾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특수업무(경계복원)로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014. 12. 31. 일부 개정된 같은 지침 중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련 접수 방법을 알려⁸⁾드리고 업무처리에 참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표 1] 측량민원 확인측량 접수 처리 방법

구분	확인측량 접수 처리	업무지원시스템(COS) 확인측량 접수 처리 화면
1	• 접수 - 특수업무(경계복원)	
2	• 계약명 및 계약일 - 민원소재지, 민원인 / 민원접수 일자 입력	
3	• 계약기간 및 집행기간 - 민원접수 일자부터 측량민원처리기간(14일) 입력	
4	• 경감사유 - 지적민원 확인측량(경감을 100%)_신설	

7) 제6조 제6항 3.확인측량의 절차 가.민원처리 담당자는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특수업무(경계복원)로 접수하여 처리한다.

8)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확인측량 접수 방안 알림(국토정보공사 업무연락: 2015. 1. 13.)

[표 2] 측량민원 확인측량 및 무료경감 실적 누락 현황(2015. 1. 1.~2016. 4. 21.현재)

(단위: 건/필/원)

구분	대상토지	완료분류	건수	수량	면적(㎡)	수수료적용금액	봉사금액(누락)
2015년	□□도 ■■■시 ■■■면 ■■■리 1168	확인측량	1	1	5,853	1,145,000	1,145,000
	□□도 ■■■시 ■■■면 ■■■리 180-4	확인측량	1	1	5,633	1,668,000	1,668,000
	□□도 ■■■시 ■■■면 ■■■리 138	확인측량	1	1	495	628,000	628,000
2016년	□□도 ■■■시 ■■■동 71-152	확인측량	1	1	884	751,000	751,000
	□□도 ■■■시 ■■■동 552-1	확인측량	1	1	989	853,000	853,000
계			5	5		5,045,000	5,045,000

※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및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1], [표 2] 현황과 같이 측량민원 확인측량 5건 (5,045,000원)을 업무지원시스템(COS) 접수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무료 경감 봉사실적(5,045,000원)이 누락 되는 등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절차 및 무료경감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무료경감 실적 5,045,000원이 누락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및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련 접수 절차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민원 해결을 위한 확인측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회의비 집행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공사 「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업무에 필요한 각종 회의·협의회·간담회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의비로 계정과목 정의하고 있으며,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 관련 회의를 위한 다과 구입 비용을 회의비로 집행하고 있다.

「예산집행지침」에 민원업무 및 제도개혁 회의비는 예산에 정하는 직원 1인당 월 15,000원 한도 내에서 회의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견적서에 의한 가격 결정)에 추정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내부결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의 다과를 구입할 경우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내부결재를 득하고 법인카드로 다과를 구입함이 타당하다.

[표] 회의비 집행 현황

(금액단위: 원, VAT 포함)

회계연도	예산과목	거 래 처	적 요	집행금액	품의요구 유무	결제방법	비 고
2015년	(업)회의비	◇◇◇◇◇ ■ ■ 점	직원회의비 집행 법인카드 미지급금	1,631,610	×	법인카드	총 12회 집행
2016년	(업)회의비	◆◆◆◆◆ □ □ 점	직원회의비 집행 법인카드 미지급금	428,310	×	법인카드	총 3회 집행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2015년~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회당 100만 원 미만의 총 15회 회의비(다과 구입 추정)를 집행하면서 물품품의 및 요구서에 의한 내부결재를 득하지 아니하고 법인카드를 다과를 구입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지출증빙인 법인카드 매출전표 또한 구입내역이 없어 다과를 구입한 것인지 미확인 되는 등 회의비 지출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을 회의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가는 예산집행을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예산집행지침」 및 「회계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세출과목(교육훈련비 및 여비교통비) 적용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각종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여비를 교육훈련비 과목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교육훈련규정」 제4조(교육의 종류)는 교육은 연수교육, 원격교육, 위탁교육, 수탁교육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교육훈련 여비)는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지침」 4. 목별세부지침의 ‘차.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여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교육관련 활동인 직장교육, 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비 계정을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그 외의 출장여비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표] 교육관련 여비지급 현황(2014년~2015년)

지출일자	전표번호	적 요	지출금액(원)	세출과목명	
				오	정
2015-03-19	45	2015년 직무성과 협약식 참석차 (○○○○부-2260호 관련)	28,200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2014-01-02	292	사무식참석및수수료 교육	80,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1-03	302	고객관리시스템 교육참석차	40,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1-15	410	성과검사프로그램 교육참석차	40,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2-20	313	2014공간정보 교육	100,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2-21	143	2014관리자워크샵참석차	82,2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2-25	603	나는lx인이다2 교육참석차	75,4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3-24	482	기관맞춤형청렴 교육참석차	133,86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3-24	531	직원연수 교육참석차(중견사원교육)	61,73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3-27	358	KLIS자료정비 교육참석차	198,5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5-30	272	반부패청렴 워크샵참석차	329,9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6-13	203	두레팁협업 워크샵 참석차	28,2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7-16	134	현장안전관리및 보건 교육참석차	44,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7-16	5	2014직장 교육(군재 산관리시스템 교육)	280,4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7-24	284	2014직장 교육참석차	133,6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7-28	225	2014지적재조사연수 교육	67,53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8-04	22	2014지적측량수수료 교육참석차	64,8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8-07	2	지적측량시스템 교육참석차	244,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8-20	749	2014직장 교육참석차	108,4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9-01	526	2014직장 교육참석차	66,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09-22	14	2014국어교육원 교육참석차	83,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11-17	158	재직자생애설계 교육참석차	58,76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4-11-17	161	재직자미래설계 교육참석차	66,33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5-01-05	170	2015사무식참석및 수수료 교육참석차	97,0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5-01-16	74	2015셀프리더십향상과정 연수 교육	60,13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5-01-22	118	2014지적측량수수료 교육참석차	54,4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5-02-16	728	2015관리자워크샵참석차	110,8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2015-12-15	603	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연금DC형 전환 교육 참석차(○○○○처-10218호 관련)	56,400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세출과목 적용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 현황과 같이 여비교통비로 지출해야 할 것을 교육훈련비로 지출하거나 교육훈련비로 지출해야 할 것을 여비교통비로 지급하는 등 세출과목 적용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예산집행지침」 및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하지 않아 관리업무비가 증가하는 등 예산지출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교육훈련규정」등 관련규정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과목 적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